

# 지자체 현장·수요자 중심의 지방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방안



## 연구진

**황해동**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 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OECD 규제정책전망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에서 우리나라 규제수준은 긍정적임
  - 2015년에는 주요 평가분야 중 이해관계자 참여(법률)이 9위를 기록한 것 외에는 모두 10위권 밖에 속함
  - 2021년은 모든 분야에서 10권 안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 분야의 경우 2위를 기록함
- 최근 규제 혁신 방식은 실제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수정함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추진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규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축인 지방규제해소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규제와 지방규제에 관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제해소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
- 현 정부는 규제시스템 혁신(16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114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규제 혁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지방규제 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규제 또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규제해소를 위한 주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의 정의와 이론을 검토함
  - 규제는 국민의 특정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현행 활용되고 있는 규제는 지방규제와 구분될 필요성을 제기함
  -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는 행정규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지방규제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규제해소를 위해 우선 규제와 지방규제의 개념을 구분하여 차이점을 제시하고 지방규제의 방향성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언급함
- 규제에 관한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함
  - 국내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공공기관의 내부자료를 검토함
  - 규제해소를 위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지방규제의 방향성 제고함

## 3. 주요 연구 내용

- 해외 규제해소의 시사점
  - 해외의 경우 규제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통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

- 규제해소 초기에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정밀한 정량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특히, 정부주도의 규제해소에서 벗어나 규제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해소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에 대해 고민하는 협력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규제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및 관점이 포함됨에 따라 소통창구(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안) 및 관련 장단점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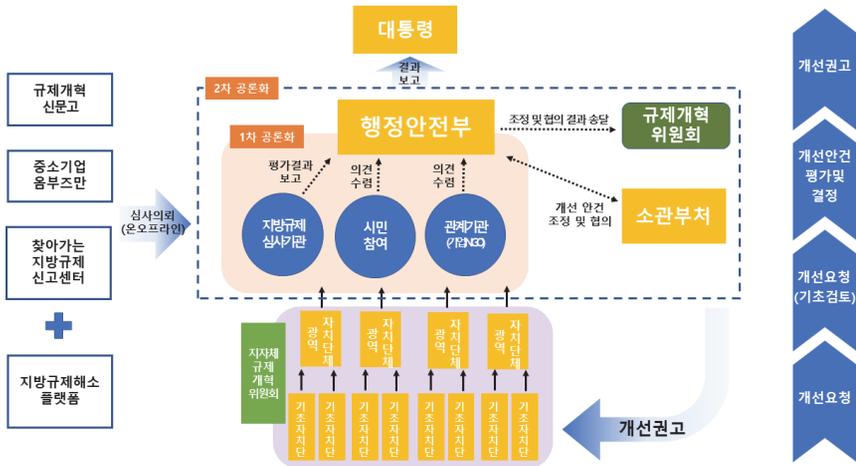
- (1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장점: 규제자를 지방자치단체, 규제범위를 위임된 사무, 피규제자를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구체적인 규제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단점: 규제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상정하여 규제해소를 위한 대상 및 사무가 한정적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규제해소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2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장점: (1안)에서 규제범위만 제외한 것이며, 규제자와 피규제자를 상정하여 규제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일정부분 구체성을 갖추고 있음
  - 단점: (1안)과 같이 상당부분 규제 내용이 있으므로 규제해소에 경직성이 있음
- (3안)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장점: 규제자 없이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범위만을 상정하여 규제해소 대상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여 적극해소가 가능함
- 단점: 규제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 내용에 따라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함

○ 효율적인 지방규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함

- 현재 규제해소를 위한 소통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행안부)임
- 그러나 효율적인 지방규제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평가주체 측면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언급함

〈그림 1〉 지방규제해소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 Contents

지자체 현장·수요자 중심의 지방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방안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체계도	8

## 제2장 | 기존 규제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

제1절 규제의 개념 논의	13
1. 규제의 개념	13
2. 기존 지방규제의 개념 및 특성	16
제2절 기존 규제의 유형 구분	17
1. 경제적 규제	17
2. 사회적 규제	18
3. 행정적 규제	19
4.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	20

## 제3장 | 규제정책의 내용 및 규제해소의 한계

제1절 현 정부 규제정책	25
1. 추진체계	25
2. 규제해소 창구	29
3. 규제등록 등 심사 현황	31

제2절 규제해소 운영절차 .....	33
1. 이전 정부 규제해소 정책 검토 .....	33
2. 규제심사 운영절차 .....	36
제3절 규제해소의 한계 .....	41
1. 규제와 지방규제의 차이 .....	41
2. 지방규제의 중요성 .....	42
3. 지방규제 해소의 문제점 .....	43

#### **제4장 | 국가별 지방규제 해소 사례 분석**

제1절 분석개요 .....	49
제2절 미국의 규제해소 .....	50
1. 규제 개요 .....	50
2. 규제 정책 .....	51
3. 규제 체제 .....	53
제3절 영국의 규제해소 .....	63
1. 규제 개요 .....	63
2. 규제 정책 .....	64
3. 규제 체제 .....	65
제4절 일본의 규제해소 .....	72
1. 규제 개요 .....	72
2. 규제 정책 .....	72
3. 규제 체제 .....	73
제5절 호주의 규제해소 .....	79
1. 규제 개요 .....	79
2. 규제 정책 .....	80

3. 규제 체제 ..... 84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 91

**제5장 | 지방규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 99

    1.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 99

    2.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근거 ..... 107

    3.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안) 및 세부내용 ..... 113

제2절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 117

    1.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필요성 ..... 117

    2. 거버넌스 체계 개선내용 ..... 122

제3절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내 정부별 역할 ..... 125

    1. 중앙정부 ..... 125

    2. 지방자치단체 ..... 127

**참고문헌 ..... 129**

# 표목차

---

〈표 1-1〉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	3
〈표 2-1〉 규제의 개념 .....	13
〈표 2-2〉 규제의 유형 .....	15
〈표 2-3〉 규제의 세부 유형 .....	19
〈표 2-4〉 규제이원론 문헌의 분류 .....	20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규제등록 수 .....	32
〈표 3-2〉 김대중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계 .....	33
〈표 3-3〉 노무현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계 .....	34
〈표 3-4〉 이명박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계 .....	35
〈표 3-5〉 박근혜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계 .....	35
〈표 3-6〉 지방규제 부처-지자체 협의 유형 구분 .....	38
〈표 3-7〉 지방규제 부처-지자체 협의 유형 재분류 .....	39
〈표 4-1〉 행정부별 규제개혁 관련 법률 .....	52
〈표 4-2〉 시대별 규제개혁 관련 법률 .....	64
〈표 4-3〉 최종단계 영향평가 .....	68
〈표 4-4〉 규제법률 개정 특징 .....	73

#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	9
〈그림 3-1〉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 .....	25
〈그림 3-2〉 규제샌드박스 운영절차 .....	28
〈그림 3-3〉 규제해소 운영절차 .....	30
〈그림 3-4〉 지자체 규제 조회 화면 .....	37
〈그림 3-5〉 규제해소에서 지자체의 위치 및 규제 적용 구조 .....	43
〈그림 4-1〉 미국의 행정기관과 규제관리 체계 .....	54
〈그림 4-2〉 OBM 조직도 .....	55
〈그림 4-3〉 OIRA 조직도 .....	56
〈그림 4-4〉 규칙제정(Rulemaking process) .....	57
〈그림 4-5〉 The Reg Map .....	58
〈그림 4-6〉 영국 영향평가 단계 .....	69
〈그림 4-7〉 일본의 행정기관과 규제관리 체계 .....	74
〈그림 4-8〉 규제개혁 추진구조 .....	77
〈그림 4-9〉 Regulator Performance .....	86
〈그림 4-10〉 영향분석 예비 평가 양식 .....	88
〈그림 4-11〉 예비평가 절차 .....	88
〈그림 4-12〉 7가지 영향분석(IA) 질문 .....	89
〈그림 4-13〉 초기평가 증명서 .....	89
〈그림 5-1〉 지방규제해소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	124



# 제 1 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규제정책은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규제평가결과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규제정책전망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에서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하여 2018년\*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음
  - ※ 2018년 평가부문별 3~6위 기록

〈표 1-1〉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분 야		'15년 (9~15위)	'18년 (3~6위)	'21년 (2~7위)	관련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9위	4위	3위(1 ↑)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신문고,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15위	6위	4위(2 ↑)	
규제영향분석	법률	13위	3위	2위(1 ↑)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하위법령	12위	4위	2위(2 ↑)	
사후평가	법률	13위	3위	5위(2 ↓)	규제일몰제, 규제입증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
	하위법령	14위	3위	7위(4 ↓)	

출처 : OECD(2021).

- 최근 전통적인 중앙집권식 상명하달 구조로 이루어지는 규제 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장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거버넌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추진됨
-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실제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한 순응 확보가 중요함
  - 「행정규제기본법」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동법 제4조는 법률에 근거한 규제를 해야 하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동법 제3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규제에로 관련 추진체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간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최근까지도 규제와 지방규제에 관한 명확한 정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제해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16대),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114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방규제 혁신체계 구축 필요 강조
  -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던 지방 건의 과제가 보다 신중히 검토되도록 하여 정기건의 및 테마규제(창업·탄소중립·소상공인·산업단지) 등 발굴 및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개선, 자치단체 현장 규제 획기적 개선,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지방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연구의 목적

### □ 규제의 일반적 정의와 이론적 검토

-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방규제의 개념과 유형 검토
- 규제해소를 위한 현 규제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 □ 지방규제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필요성 제시

- 일반적으로 지방규제 관련 논의를 접근할 때, 상술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을 근간으로 두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제 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일 뿐 지방규제의 개념으로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고 규제해소의 한계를 도출하여 지방규제 추진의 중요성을 제시함
-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해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규제와 지방규제의 개념으로 차이를 제시하여 지방규제의 방향성을 제고함
-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을 위한 법률적 및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필요성의 정당성 제시

### □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적실성을 위한 지방규제해소 거버넌스체계 대안을 제시

- 현재 규제해소를 위한 거버넌스체계는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비롯하여 부처별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 달성 한계 제시

- 지방규제에 대해 미국·영국·일본·호주의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지방규제에 대한 내용과 규제거버넌스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효율적인 규제해소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대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유용성 확보 방안 제시
- 규제해소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규제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
  - 규제 및 지방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특성
  - 기존 규제의 유형 구분
-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동향 검토**
  -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특징
  - 규제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절차
  - 규제등록 및 심사현황 분석
  - 규제해소의 한계점 제시
- **지방규제 해소체계 해외사례 검토**
  - 해외 규제정책: 국가별 규제해소 체계
  - 규제해소체계 내 중앙 및 지방의 역할
  - 규제해소 추진체계 시사점
-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제시
  - 거버넌스 체계 내 기구별 역할

## 2. 연구의 방법

### □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

- 국내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내부자료 검토
- 규제관련 국내외 보고서 및 학술논문, 정부간행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제도 및 연구동향 분석
- 지방규제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절차 등 자료 분석

### □ 규제해소에 관한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
- 규제혁신사례집 등을 통한 유형 재분류 및 체계 분석

### □ 규제관련 전문가 자문(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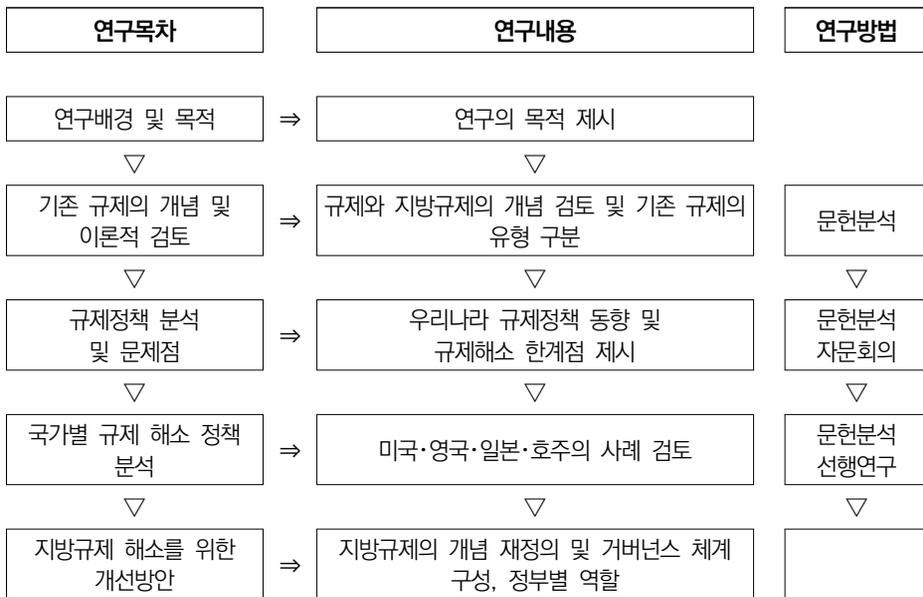
- 지방규제 세부 유형에 따른 규제 해소 방안
- 분야별 지방규제 해소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 벤치마킹 사례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

## 3. 연구의 체계도

- 본 연구는 현 규제해소 체계에서 지방규제가 개념적으로 재정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의된 지방규제를 기준으로 거버넌스 체계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을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 다루고 있음
- 제2장은 상술한 지방규제의 개념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기존 연구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규제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함

- 제3장은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규제해소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한계점을 제시함
- 제4장은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해소정책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장은 실질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방규제 재정지의 필요성 및 법률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 정부별 역할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 제2장

# 기존 규제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

제1절 규제의 개념 논의

제2절 기존 규제의 유형 구분



## 제2장 기존 규제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

### 제1절 규제의 개념 논의

#### 1. 규제의 개념

##### □ 규제의 정의

- ‘규제(regulation)’는 일반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규제개념의 수준에 따라 광의, 중의, 협의로 정의 가능

〈표 2-1〉 규제의 개념

구분	내용
광의	•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과정
중의	•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협의	•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과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정부구조 밖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정부가 설정한 표준과 주요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법과 규칙

출처 : 김현호 외(2014)

##### ○ 법률적 정의

-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특정 행위의 허용과 제한이나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등에 근거하고 있음

**헌법 제37조 제2항** :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 제11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개입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 행정규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규제의 특성**○ **규제법정주의**

- 「행정규제기본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가 규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제4조)<sup>1)</sup>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것임(김현호 외, 2014)

## ○ 규제의 원칙

- 국민의 자유와 창의 존중, 생명·인권 등의 실효성, 최소한의 범위 달성을 위한 효과성·객관성·투명성·공정성 확보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규제의 원칙**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 규제의 유형

- 규제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표 2-2〉 규제의 유형

구분	내용	관련 분야
경제적 규제	• 가격, 품질, 경쟁,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기업의 시장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	경제, 산업, 금융, 중소기업, 공정거래, 부동산 등
사회적 규제	• 건강,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 같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	보건, 의료, 복지, 식품, 안전, 환경, 고용, 교육 등
행정적 규제	•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규제	행정, 치안, 외교, 인허가, 절차 등

출처 : OECD(1992), 김현호 외(2014) 재인용

## □ 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행정규제의 범위는 인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감독 및 제재, 영업상 행위 의무,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됨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 행정규제의 적용제외**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고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2. 기존 지방규제의 개념 및 특성

### □ 지방규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 지방규제의 개념

- 지방규제는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앞서 정의한 규제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조례·규칙에 관련한 사항을 총칭함
- 즉, 지방규제란 ‘중앙정부에서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 내 혹은 중앙정부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는 것’(Teske, 2004)

#### ○ 지방규제의 법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절 기존 규제의 유형 구분

### 1. 경제적 규제

-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말함.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혹은 서비스)의 가격(또는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총칭함
- 경제적 규제는 모두 동일사업에 속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공통점을 가짐
  - 경제적 규제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규제에 비해 약한 편으로 대체로 시장경쟁의 효과성과 공평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음
    - 경제적 규제는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경제적 변수를 규제
    - 경제적 규제는 항상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하이에크(Hayek)는 자유경쟁적 시장질서를 자생적 질서로 보고 그 자체가 무목적적이며 의도된 결과가 아니고 학습과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개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발전되어온 질서로 봄. 이에 따라 정부의 책무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통의 행위준칙을 발견·실천하는 것으로 봄(김권식, 2014)<sup>2)</sup>
- 경제적 규제는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요구에 호응하고 피규제산업에 대해 동정적 입장을 취하는 규제기관의 포획(regulatory capture)현상 발생 가능
  - 경제적 규제의 폐해에 대한 비난은 신규진입을 원하는 측이나 수요자의 측에서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규제의 철폐가 바로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이 되는 특징이 있음

2) 김권식(2014),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대 축: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 강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통권 2014-06

-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보호,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의 두 가지로 나뉨
  -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1) 독과점 횡포의 방지 2) 부당이득의 방지 3)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4)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공급의 확대의 목적을 가짐
  -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1) 과당 경쟁의 방지 2) 산업 육성 3) 불공정한 기업 간 경쟁 방지의 목적을 가짐

## 2. 사회적 규제

-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함.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의미함
- 사회적 규제는 거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특정 산업에 포획되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음
- 사회적 규제의 경우, 규제 자체의 필요성 혹은 이론적 타당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편으로, 이론적 근거는 대부분 시장실패에서 찾아짐
  - 사회적 규제는 거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사회적 규제는 경제활동 수준(level of economic activity), 인플레이 수준에 따라 그 집행 강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 즉, 경제의 침체기 또는 인플레이기에 있어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도 이런 기업의 주장에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개인, 학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대표적으로 산업안전규제, 소비자 안전규제, 국방안보 관련 규제, 환경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sup>3)</sup> 등이 있음

- 사회적 규제는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룸
-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삶의 질 확보, 인간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등이 있음

### 3. 행정적 규제

- OECD(1997)에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외에 정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류작업과 행정적인 요식행위를 ‘행정적 규제’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이원적(二元的) 분류가 갖는 분류상의 한계를 보완
- 지방규제 중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정운영(관리)과 관련된 형식요건 관련 규제, 행정운영(관리)과 관련된 절차(행위적 요건) 관련 규제, 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 관련 규정, 국가의 보조·지원 관련 규제, 기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등을 꼽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지방규제 해소방안과 규제 해소 사례 등을 행정 범위 완화, 절차 합리화, 기준 마련으로 나누어 보고자 함

#### □ 규제의 세부 유형

〈표 2-3〉 규제의 세부 유형

경제적 규제	진입규제	•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체의 수를 제한하는 규제
	가격규제	• 완전경쟁시장 가격보다 높은 독점가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거래규제	•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사회적 규제	환경규제	• 환경의 보호 또는 질의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규제

- 3)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유형의 경우 지방의 맥락에 적합한 지방규제해소시스템의 구축방안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생략함

	보건 및 안전규제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규제
	소비자 안전 및 보호 규제	• 소비자를 사기와 기만, 위험제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제
행정적 규제	행정부범규정	• 정책대상집단 및 비용부담집단의 설정
	행정절차규정	• 행정 처리 절차의 규정
	행정기준규정	• 행정 처리 기준의 규정

#### 4.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

○ 규제이원론은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고, 경제적 규제가 시장, 요금, 지켜야 할 의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및 판매되는 조건과 제조되는 생산물의 물리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적인 생산 및 유통과정 단계에까지 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함

〈표 2-4〉 규제이원론 문헌의 분류

문헌	분류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Liley & Miller (1977)	범위	• 시장, 요금, 지켜야 할 의무 등	• 세부적인 생산 및 유통과정 단계
	영향력	• 기업 등 이해당사자 특정됨	• 산업에 확장되고 다수의 소비자에 영향
Mitnick (1980)	대상	• 시장활동	• 국민
	규제유형	• 조직 내: 생산과정통제, 경영, 요율규제 • 조직 간: 반독점, 진입통제, 거시정책	• 조직 내: 보건산업안전, 사회적 차별 금지 • 조직 간: 소득 재분배

문헌	분류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최병선 (1992)	정의	•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	•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
	목적	• 소비자보호 • 생산자보호	• 삶의 질 확보 • 인간의 기본적 권리 신장 • 경제적 약자 보호 및 형평성 확보
	종류	•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영업활동규제	• 환경규제, 소비자안전규제, 근로자안전규제, 사회적차별규제
	이론적 근거	• 시장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불신	• 대부분 시장실패이론
	규제범위	• 특정 개별산업	• 전 산업 • 국민
	시장경쟁	• 시장경쟁과 직접적 연계	• 시장과 무관한 폭넓은 대상
	포획현상	• 피규제산업의 포획현상 심함	• 포획현상이 적음
	행위자	• 정부, 피규제산업, 소비자	• 정부와 산업·소비자 외에 공익집단, 언론 등
김영훈 (1995)	규제기관	• 독립규제위원회	• 행정부 내부 또는 산하 집행부
	대상	• 특정 산업중심, 신규산업의 진입 및 퇴출, 요금결정, 시장의 범위 등	• 거의 모든 경제분야
	이론	• 소비자보호이론 • 규제에 의한 과세이론	• 시장실패이론

출처: Liley & Miler(1977) 외 다수 문헌 종합

### ○ 정치적 과정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경제적 규제는 주로 피규제산업, 소비자, 정부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규제는 제3자 집단으로서 공익집단이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사회적 규제(환경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등)는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따라서 정치적 현시성(political saliency)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역할도 두드러짐
-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사회적 규제의 정책과정은 경제적 규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게 됨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상호 배타성(mutual exclusiveness)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속성을 모두 가진 규제들이 존재
    -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에 대한 규제이므로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짐
  -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느 규제에 속하는 것인가가 아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



제**3**장

## 규제정책의 내용 및 규제해소의 한계

제1절 현 정부 규제정책

제2절 규제해소 운영절차

제3절 규제해소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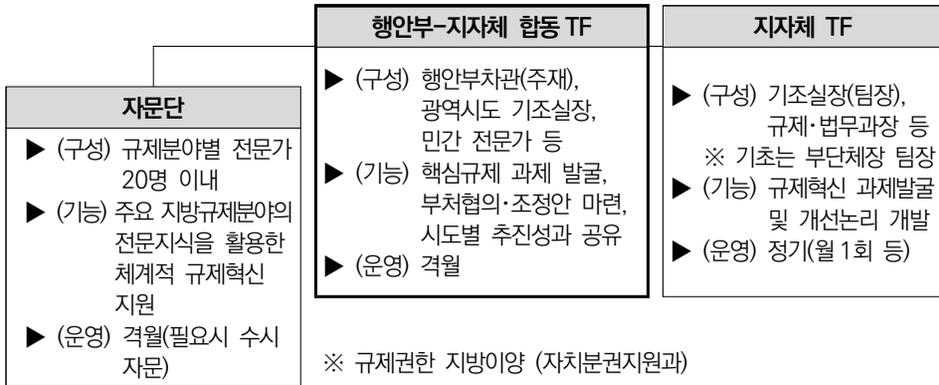


## 제3장 규제정책의 내용 및 규제해소의 한계

### 제1절 현 정부 규제정책

#### 1. 추진체계

〈그림 3-1〉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2)

#### □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 TF」(협의체) 신설·운영

- (구성) 차관(주재),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민간 전문가(학계, 경제단체, 지방연구원 등 현장 전문가) 등
- (기능) 핵심규제 개선과제 발굴, 부처협의 조정안 마련 등
  - 주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및 추진상황(부처협의·조정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 추진
- (운영) 격월 및 필요 시 수시 개최

## □ 지자체별 「지방규제혁신 TF」 구성·운영

- (구성) 기초실장(팀장), 규제·법무과장, 규제관련 부서장, 지방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 기초는 부단체장 팀장
- (기능) 각 지자체가 지역현안 규제에 대한 혁신주체로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등 규제혁신 과제 적극 발굴·개선 추진

## □ 규제해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 정부는 기존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없이 실험·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 구체적으로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규제 공간을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라 지칭(권현영, 2019)
-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없이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배영임·신혜리, 2019)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시장에 출시 전 소규모 시험,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며, 정부는 그 효과를 관찰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음
  - 이는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및 입법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고, 사업자에게는 법적 위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권현영, 2019)
- 규제 샌드박스는 AI, 로봇 자율주행 등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융복합 과학, 기술을 창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이나 정책은 개별 영역에서 거미줄 규제로 인하여 혁신과 창조를 포용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규제의 완화 및 개수 감소, 질 개선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최철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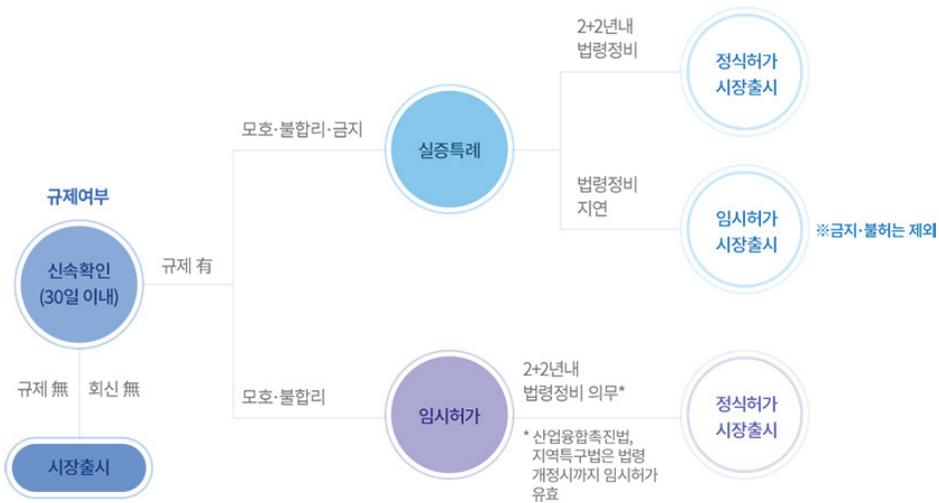
-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라는 개념 아래에서 2014년부터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여 혁신적인 경제가치와 고용효과를 창출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규제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로서 평가됨(최해옥, 2017).
- 우리나라 역시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1년에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에 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함
- 주요성과는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208건 처리가 되어 매출액, 일자리, 설비투자 및 투자유치가 증가 및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편익이 증진됨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을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최호성·김정대, 2021)

- 정부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여 실증을 기반으로 한 시장출시를 목표로 하여 4개 법령을 개정 발의하였으며, 2018년 10월 16일에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됨
- 2018년 12월 31일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맞춤형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규제혁신의 시발점이 됨(최호성·김정대, 2019)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4차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또는 첨단과학 분야 관련 된 것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완벽한 안전성이나 무흠결성이라는 점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상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기준 내지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 기술 등은 실제 사회 및 산업 현장에서 경험되기도 전에 사장됨
-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되어 있는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 샌드박스라 할 수 있음

〈그림 3-2〉 규제샌드박스 운영절차



자료: 규제정보포털

## 2. 규제해소 창구

### □ 온라인 규제해소 창구

####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는 ‘규제 건의’와 ‘지방 규제개혁신문고’로 나뉘어 있음
- 지방 규제개혁신문고는 지자체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나 해당지역 주민·기업 등의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으로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
- 규제 개혁 건의 이후에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음
  -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 일부 건은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
-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가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하면,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존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 종합검토·심의,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

#### ○ 중소기업 ombuds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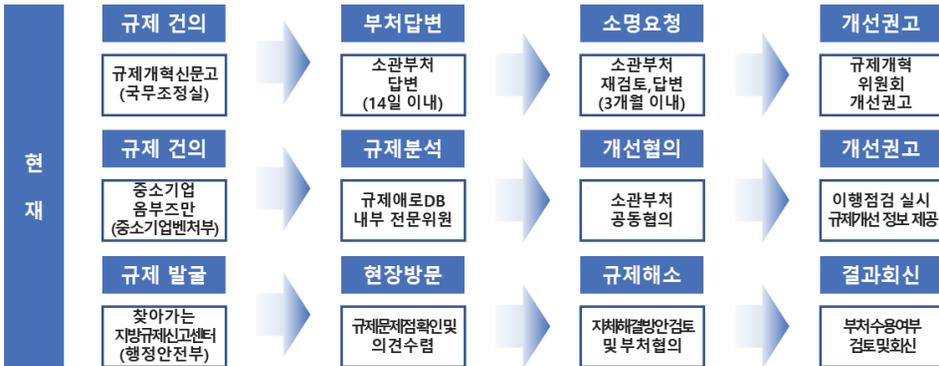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 ombudsman이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업 규제애로 쾌속처리시스템구축, 규제애로 등 발굴·처리하는 시스템임
- 신고사항은 기업투자 불편 규제애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애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등임
- 추진방식은 ombudsman 지원단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를 연계하여 규제과제 발굴처리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함

- 중앙센터는 기업인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읍부즈만지원단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는 방식임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 행정안전부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규제해소가 필요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과제화하여 지자체 자체 노력 및 중앙 건의·협의 등을 통해 개선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권고하였으며, 모든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임

〈그림 3-3〉 규제해소 운영절차



□ 규제해소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
  - \* 지방규제혁신과 주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수행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 총괄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 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 애로사항 발굴 등의 업무 추진

### 3. 규제등록 등 심사 현황

- 광역자치단체별 규제등록 수는 경기, 전남, 전북 순으로 가장 많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6%를 차지
- 규제등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5,962건(14.8%)이며, 전남 3,981건(9.9%), 전북 3,859건(9.6%)으로 나타났으며, 세종과 대전, 울산 순으로 각각 546건, 795건, 817건의 규제를 등록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수도권은 10,455건으로 전체 40,231건 중 26%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9,776건으로 74%를 나타냄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규제등록 수

광역자치단체	규제등록수	비율
서울	2,603	6.5%
부산	1,429	3.6%
대구	1,176	2.9%
인천	1,890	4.7%
광주	918	2.3%
대전	795	2.0%
울산	817	2.0%
세종	546	1.4%
경기	5,962	14.8%
강원	3,289	8.2%
충북	2,453	6.1%
충남	3,123	7.8%
전북	3,859	9.6%
전남	3,981	9.9%
경북	3,409	8.5%
경남	2,772	6.9%
제주	1,209	3.0%
합계	40,231	100.0%

자료: 규제정보포털(2022년 10월 17일 검색)

## 제2절 규제해소 운영절차

### 1. 이전 정부 규제해소 정책 검토

#### □ 김대중 정부

- 규제해소를 위한 도입 제도: 규제등록제도, 규제영향분석,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규제 품질관리, 규제일몰제 등
- 규제 방향: IMF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규제개혁 추진
- 추진방향: 경쟁제한적 규제 또는 국제규범 미달 규제는 폐지, 환경 등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규제수단·기준 합리화를 통한 규제의 질 향상
-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 중심

〈표 3-2〉 김대중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지자체 규제심사기구
소속	대통령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구성	20인(위원장2, 민간12, 정부6)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주요기능	신설·강화규제 심사 부처별 정비계획 심사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자체정비계획 수립·추진	조례·규칙 규제정비

※ 규제신고센터('99~) : 규제위·중앙부처·지자체·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추진수단: ① 규제등록 의무화, ② 중점추진 규제분야 선정·정비, ③ 연차별 규제 감축목표량 설정·정비, ④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도입, ⑤ 법령 미근거규제 정비

## □ 노무현 정부

- 규제방향: 규제품질관리 및 규제개혁 과정의 민간 참여 강조
- 추진방향: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규제의 객관성·구체성 제고, 중복 규제 제거, 국제 수준의 규제 개선
- 추진체제: 규제개혁위원회 중심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04) 운영, 규제연구센터('03)·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04)·기업애로센터('04) 신설

〈표 3-3〉 노무현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제

	규제연구센터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	기업애로해소센터
소속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주요기능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관련 연구 규제품질관리 시행 지원	덩어리규제 정비	개별규제 민원 해결
비고	-	공공·민간 동수 참여	중앙·지방공무원(9인) 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추진수단: ① 규제 네트워크\* 강화(다부처 규제개혁), ②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경제5단체 등의 건의 정례화), ③ 규제개혁실태 점검·환류 강화(포상·인센티브), ④ 규제총량제 도입, ⑤ 유사행정규제 개혁, ⑥ 규제지도 사업
  -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고충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중심

## □ 이명박 정부

- 추진방향: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규제품질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평가·인센티브 강화
- 추진체제: 규제개혁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로 이원화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08) 신설(국경위·대한상공회의소 공동운영)

〈표 3-4〉 이명박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	대통령 (행정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회)
구성	25인(위원장2, 민간17, 정부6)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주요기능	신설·강화규제 심사 부처별 정비계획 심사	기존규제(덩어리규제) 정비
비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08년 규제신고센터('99~)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04~) 폐지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추진수단: ① 규제정보시스템 구축(투명성·접근성 제고), ② 인센티브 강화, ③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 ④ 재검토형 일몰제 도입
-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한 뒤 유예기간 이후 규제 집행력 회복

#### □ 박근혜 정부

- 추진방향: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손톱 밑 가시 규제(기업애로) 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개혁 추진상황 대국민 공개
-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 중심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신설('13),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연2회·규제개혁신문고('14),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 운영

〈표 3-5〉 박근혜 정부 규제해소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소속	대통령	국무조정실
구성	25인(위원장2, 민간17, 정부6)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29인(단장3, 민간13, 정부13) *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국조실
주요기능	신설·강화규제 심사 부처별 정비계획 심사	기업*애로 발굴·개선 * 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추진수단: ① 규제비용관리제, ② 규제기요틴, ③ 신산업·인증·조달 규제정비  
④ 공장설립이 쉬운 나라 프로젝트, ⑤ 면책제도(지자체)

## 2. 규제심사 운영절차

- 규제 문헌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제를 경제적·사회적 규제로 구분하나, 최근 규제 현  
장에서는 추구하는 정책가치를 포함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쉬  
운 언어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추세임
- 규제 유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됨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원인과 효과, 이익집단·정치인·관료 간의 상호작용 패턴, 역사적 변천과정, 시장경제에 대한 함의 등 여러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임
- 그러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는 경우 정책수단 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함
  - 투입요소기준 규제, 성과기준 규제, 경제 유인 규제, 시장기반 규제 등 정책수단에 의한 분류 가능함(최병선, 2009)
-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15년까지 경제적규제·사회적규제·행정적규제로 나누어 규제 등록 제도를 실시하다가 현재는 보다 정책 가치에 초점을 맞춘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 규제, 맞춤형 규제, 키워드별 검색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임
  - 지자체의 경우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음
    - 규제조회를 통해 규제사무명, 자치단체, 상위법령 및 조항, 자치법규근거, 시행일, 규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

〈그림 3-4〉 지자체 규제 조회 화면

**지자체** |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동하여 제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규제카드**

**기본정보**

규제사무명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등 신청		
등록사유	기존규제	사무특성	자치사무
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6-01-18
유형별	1호 허가	부문별	문화공보

**법적근거**

상위법령	<b>법률</b>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치법규	<b>조례</b>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공포일	2021-12-31	시행일/폐지일	2021-12-31 / -
존속기한	-		

출처: 규제정보포털(<http://better.go.kr>), 아래 상세정보(규제목적, 규제내용, 규제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 변동경과, 규제재검토 등의 항목)은 생략함

□ 2019년-2021년 지방규제완화 사례 분석 개요

- 2021년 지방규제완화 사례를 분석
- 이러한 규제 완화 유형 분류는 실무적인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행정적 규제 및 세부 유형별로 2021년 지방 규

### 제 793개를 재분류함

- 해당 분류는 연구진 내부 상호 검토 및 외부 자문을 거친 분류로서, 부처 검토 건의 내용의 유형 분류에 기초하였음
  - 이론적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각 유형의 규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효과를 기준으로 <표 3-6>의 유형 구분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개별 규제 완화 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 재분류

〈표 3-6〉 지방규제 부처-지자체 협의 유형 구분

	유형구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기타
'21	개선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li> <li>• 매출증가</li> <li>• 투자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편해소</li> <li>• 안전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담감소</li> <li>• 비용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li> </ul>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1년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협의 결과)

### □ 규제 해소 유형 분류 결과

- 경제적 규제 99개(13%), 사회적 규제 280개(35%), 행정적 규제 363개(46%)로 나타남. 규제 완화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51개(6%)로 나타나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
- ‘고용창출’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경제적 규제 16개(57%), 사회적 규제 6개(22%), 행정적 규제 6개(21%)로, 경제적 규제에 가까운 유형이라 판단되었음
- ‘매출증가’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사회적규제 21개(78%), 경제적규제 5개(18%), 행정적 규제 1개(4%)로 사회적 규제에 가까운 유형이라 판단되었음
- ‘투자증가’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경제적 규제 20개(41%), 사회적 규제 20개(41%), 행정적 규제 9개(18%)로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불편해소’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행정적 규제 213개(59%), 사회적 규제 135개(37%), 경제적 규제 14개(4%)로 행정적 규제에 가까운 유형이라 판단되었음
- ‘안전제고’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행정적 규제 26개(55%), 사회적 규제 20개(43%), 경제적 규제 1개(2%)로 행정적·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행정부담 감소’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행정적 규제 51개(53%), 사회적규제 31개(32%), 경제적 규제 14개(15%)로 행정적 규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비용절감’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사회적 규제 25개(52%), 행정적 규제 16개(33%), 경제적 규제 7개(15%)로 사회적 규제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음
- ‘기타’ 개선효과에 해당하는 규제 중 행정적 규제 41개(48%), 경제적 규제 22개(26%), 사회적 규제 22개(26%)로 행정적 규제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음

〈표 3-7〉 지방규제 부처-지자체 협의 유형 재분류

	유형구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21	개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li> <li>• 투자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제고</li> <li>• 매출증가</li> <li>• 투자증가</li> <li>• 비용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담 감소</li> <li>• 안전제고</li> <li>• 불편해소</li> <li>• 기타</li> </ul>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1년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협의 결과)

#### □ 법령의 유형에 따른 분류 결과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1개인 경우와 2개 이상인 경우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1개인 경우에는 행정적 규제 (316개)→사회적 규제 (250개)→경제적 규제 (87개)로 나타남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2개 이상이 경우에는 행정적 규제 (47개)→사회적 규제 (30개)→경제적 규제 (12개)로 나타남
- 규제 해소에 관련된 법령이 1개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경우보다 더 규제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시행령·시행규칙인 경우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시행령·시행규칙인 경우 사회적 규제(152개)→행정적 규제(138개)→경제적 규제(44개)로 나타남
  - 규제해소 관련 법령이 시행령·시행규칙인 경우 수용곤란(62%)→증장기 검토(14%)→기시행(13%)→수용(6%)→일부수용(5%)순으로 나타남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예규·지침·세부기준인 경우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예규·지침·세부기준인 경우 행정적 규제(35개)→사회적 규제(10개)→경제적 규제(7개)로 나타남
  - 규제 해소 관련 법령이 예규·지침·세부기준인 경우 수용곤란(55%)→증장기 검토(19%)→일부수용(14%)→기시행(6%)→수용(4%)→제외(2%)로 나타남

## 제3절 규제해소의 한계

### 1. 규제와 지방규제의 차이

#### □ 개념적 차이

-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규제의 목적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수단은 법령, 조례, 규칙임
- 지자체는 법적용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를 개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임
- 지방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 달리 지자체가 제기한 모든 규제(중앙법령·자치법규)로, 경제·사회규제나 기업규제와 달리 규제내용 및 대상에 따른 분류에 적용하기 어려움
-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술의 변화 및 도입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구구조변화 및 지역 간 격차, 균형발전 등 새로운 환경의 영향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 규제해소 역할의 차이

- 중앙정부 중심의 다수 규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채택할지 여부는 지자체의 정책 재량과 관련이 있음(이은미·이은국·고기동, 2014)
- 지자체는 중앙에서 제·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한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자치법규상 규제가 '민원'의 형태로 기업이나 주민과 만나는 규제의 최종적인 집행자임(김현호 외, 2014)

- 지방규제 개혁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대리집행자 역할 수행(엄영호·손선화, 2018)

## 2. 지방규제의 중요성

### □ 규제의 특성

- 중앙정부는 규제정책의 전략수립·형성 및 지방정부의 집행실태 감독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직접적인 규제집행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이원적인 구조가 형성됨(박순애·손지은, 2015; 손지은, 2016)
- 자치단체는 제·개정된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으로 상위 법령에 제·개정된 내용이 지자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함
- 자치단체는 대부분 국가 위임 사무를 맡아,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 회에서 자치법규로 조례·규칙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격의 규제가 많음
  - 지자체는 개발정책,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정책 역시 상당히 가지고 있음(이은미·이은국·고기동, 2014)
  - 지방정부는 법령이 구체화되어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현장이므로 규제 집행의 전달체계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순응확보와 중앙에서 강화·완화된 규제의 내용 및 규제수단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김신·최진식, 2009; 박순애·손지은, 2015; 손지은, 2016)
- 지방정부는 규제를 해석하는 역할 및 현장에서 규제집행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규제에 대한 연구 부족(OECD,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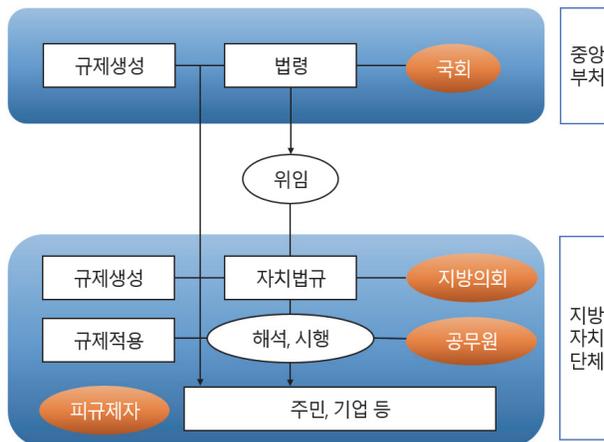
### 3. 지방규제 해소의 문제점

#### □ 규제해소의 문제점

##### ○ 법률 개정 권한과 규제개혁 실천에 관한 문제

-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법령 중 지자체가 직접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국한됨(이민창·김주찬, 2015)
-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규제로 인해 지자체 현장에서 규제 애로가 지속 발생하여 지자체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 규제발굴개선(건) : ('19) 6,289/602 → ('20) 6,300/528 → ('21) 6,165/484)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개혁 요구는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경쟁력 확보나 지방정부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우려 있음
- 지자체가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경로가 부족하여, 지자체는 지방규제혁신의 주변부로 전락하는 경우 발생함

〈그림 3-5〉 규제해소에서 지자체의 위치 및 규제 적용 구조



출처: 김현호·박해욱(2014),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 ○ 일선 규제 개혁 현장의 참여 문제

-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향식 규제개혁 추진에 피로감 호소
- 규제개혁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위임된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소극행정 행태가 나타남
- 자치사무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형태와 규제 집행 방식 등 각종 제도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근거 규제의 양산 가능성 제공
- 규제 집행에 있어 관행적 집행 패턴이 책임회피와 미온적이고 변화 저항적인 업무 추진 행태 양산

### ○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큰 변화를 보이더라도, 지방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규제개혁의 목표는 무의미하며 지방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부처의 편의에 맞게 규제가 제·개정 및 운영되는 경우, 비현실적 규제·저품질 규제·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임성일 외, 2013)

- 지방규제는 법령에 포함된 중앙정부 규제의 세부사항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고, 자치법규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은 실효성이 떨어짐(김신 외, 2010)
- 중앙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조례 등 지자체 규제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 규제 혁파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함(김광휘, 2015)
- 지방 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피규제자들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규제는 중앙정부에 비해 체감도가 더 낮음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규제 해소

-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에 관한 개혁 및 협력적 관점의 연구는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중앙정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절차 및 제도 개선의

방향성 제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규제개선위원회(광역시 및 도 단위에는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시·군 단위는 시·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함

○ 현대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는 정책문제에 대한 협력이 어렵고, 어느 한 정부의 주도적 위치에서 전권을 행사하기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부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지연을 야기시키고, 국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게 됨
- 예를 들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별 다른 규제기준이 적용될 경우 복수의 지방 주민 간 평등권 위반(헌법 제11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관계를 전제로 상호 협의에 따른 국정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통제법리 중심의 관여에서 협력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관계가 정착되어야 함

○ OECD(2017)는 규제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꼽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규제준수, 이행조사 및 규제 집행을 담당
- 입안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과 관련된 규제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 정리하면, 명령지시적인 규제보다 복잡한 규제체제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정부와 시장을 인지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정민경·임현, 2018)

-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현안규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간 공동 협의 후, 신속·정확하게 해소하는 시스템 강화 필요

#### □ 지방규제 문제 유형 및 정비방안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내실화 없이 국민의 규제개선체감도 제고는 물론, 국가적 목표 달성도 어려워지므로 실질적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현장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임성일 외, 2013)
- 지방규제의 문제 유형으로는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등 포함) ③ 법령상 위임이나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그림자 규제 ④ 그 밖에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사항 등이 존재함(법제처, 2014)
-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생성과 규제 적용 단계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규제 폐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제4장

## 국가별 지방규제 해소 사례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미국의 규제해소

제3절 영국의 규제해소

제4절 일본의 규제해소

제5절 호주의 규제해소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 제4장 국가별 지방규제 해소 사례 분석

### 제1절 분석개요

#### □ 대상 범위

-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참조모형(reference model)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외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접 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동향 조사
  - 제시된 국가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며 정부의 체질을 개선하여 탈규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관리기구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도입하였고, 정부와 민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함

#### □ 내용 범위

- 규제 방향 검토 및 특징 분석
  - 각국의 규제의 목적 및 방향성을 검토하여 규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 조사
- 규제 정책 및 법률 분석
  - 기존과 규제 관련 법률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현재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적 특징 분석
- 규제 체계 검토
  - 규제관리를 위한 추진기구의 운영 배경 및 목적 검토,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 조사
- 시사점 제시
  - 각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및 제도적 시사점 제시

## 제2절 미국의 규제해소

### 1. 규제 개요

#### □ 규제목적

- 시민의 복지 증진 또는 시장의 경제 환경개선을 위해 제공
  - 법과 개인의 자유·권리 등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규제개혁 추진
  - 사회 전체의 비용을 측정하고 최소화 및 성과 중심의 규제 목표

#### □ 규제제도

-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초
  - (관련법령)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제12866호)에 따라 규제개혁의 철학과 원칙이 천명되었고 규제법정주의를 명문화함
  - (중앙-지방) 연방제 국가로서 주정부에 규제권한 위임. 주 별로 규제사무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 존재. 비교적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미시간 주 등은 연방정부와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여 규제 정비(OIRA, 2001)

#### □ 규제수단

- 1997년 B/C Analysis로 시작하여, 1981년과 1993년 보완·개정 후 현재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이 됨
  - (규제영향분석) 행정명령(제12966)호에 의해 규제제안 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의무화. OIRA에서 독립적 검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지침 제정, 중요규제의 경우 초안·최종안 총 2회에 걸쳐 규제영향분석 적절성 심사
  - (행정부담감축)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은 행정부담감축 제도적 근거이며, 정부문서업무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GPEA)를 통해 규제기관들의 전자서명 및 보안장치에

대비 요구(OMB, 2009a)

- (시민참여확대) Regulations.gov<sup>4)</sup> 및 BMA<sup>5)</sup>를 통해 시민이 정부규제과정에 참여 및 아이디어 제공. 기업들의 규제지침 및 처리양식 등의 정보제공

## 2. 규제 정책

### □ 규제개혁 관련 법률

- (1970년 이전)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 APA)의 통과를 통해 관료적 전문성과 입법책임의 균형을 맞추었고 기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 기관에 공고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 (1970-80년대) 경제규제완화 및 편익비용분석: 규제를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간주, 계량화된 영향분석 모델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를 지속적 추진
  - (카터행정부) 새로운 규정영향 분석 및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명령(제12044호)제정. 이후 1980년 정보규제실(OIRA) 설립과 함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PRA) 및 규제유연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of 1980: RFA)제정
  - (레이건행정부) 행정명령(제12291호):ORIA의 중앙규제 감독역할 확대
- (1990-2000년대) 편익비용분석기반 및 사회의 순이익 최대화
  - (클린턴행정부) 행정명령 제12291호와 행정명령 제12866호 개정하여 OIRA가 규제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권한 부여
  - 1996년 규제유연성법을 보완하여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SBREFA) 제정

4) <https://www.regulations.gov/>

5) <https://www.sba.gov/>

- 1999년 긴급추가예산법(Omnibus Consolidated and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of 1999 제638조 제a항)을 통해 OMB에 행정기관의 규제에 의한 비용과 편익, 규제개혁 관련한 권고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
- (2001년대-현재)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규제완화
  - (오바마행정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일반원칙규정
  - (트럼프행정부) 규제 완화로서, 2017년도에 도입된 저장-유량 연계 규정(A stock-flow linkage rule)<sup>6)</sup>,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Rule, TROR)<sup>7)</sup>도입,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규제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Regulatory Cap’제도 도입<sup>8)</sup>
  - (바이든행정부) 규제검토의 현대화(Modernizing regulatory review)<sup>9)</sup>로서 행정명령(제13992호)을 통해 관리예산처가 규제 검토를 현대화하는 프로세스를 착수 요구

〈표 4-1〉 행정부별 규제개혁 관련 법률

연대	목표	법률	제도 및 기관
1970이전 (트루먼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헌위임논쟁</li> <li>- 관료적 전문성 및 입법 책임 균형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절차법:194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규정 개정 및 폐지 경우, 기관 공고 제공·의견수렴</li> </ul>
1970-1980 (카터·레이건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완화 및 편익비용분석</li> <li>- 계량화된 영향분석 품질관리체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명령(제12044호)</li> <li>• 문서감축법:19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정보규제실(OIRA)</li> </ul>

6) 2017년도에 도입된 저장-유량 연계 규정(A stock-flow linkage rule)은 OMB가 승인한 기관의 규제 총 비용이 회계연도 비용한도(Fiscal Year Cost Allowance)를 초과하지 않는 방식을 요구

7) 행정명령(제13771호)하나의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여, 규제 신설에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기존 규제의 폐지로 상쇄하도록 하는 규제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

8)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별 신설 폐지계획을 취합해 Unified Agenda를 발간 및 공개함. 최신 Unified Agenda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는 신설될 수 없음

9) 규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공중보건 및 안전, 경제성장, 사회복지, 인종정의, 환경관리, 인간 존엄성, 형평성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증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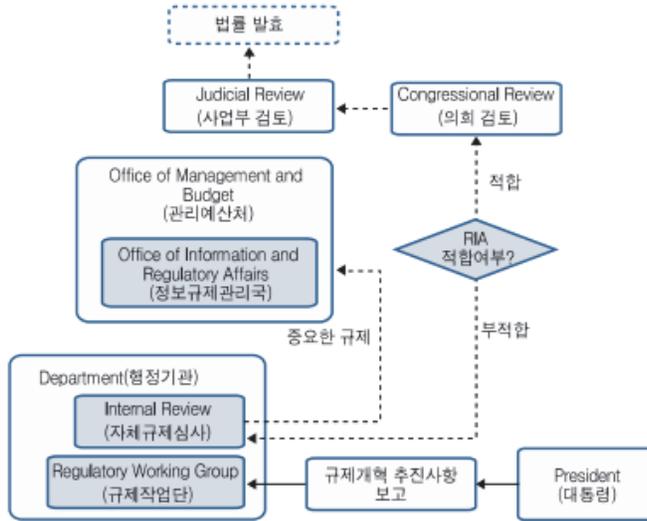
연대	목표	법률	제도 및 기관
1990-2000 (클린턴행정부)	• 편익비용분석기반 사회적 순이익 최대화	• 행정명령(제12291호) • 중소기업규제 집행공정법:1996 • 긴급추가예산법:1999	• (제도) B/C Analysis 및 규제영향분석 • (도구)Regualtions.gov 및 BMA
2001-현재 (오바마행정부 이후)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완화	• 행정명령(제13771호; 제13777호)-현재폐쇄 • 행정명령(제13992호)	• (제도)RegulatoryCap

### 3. 규제 체제

#### □ 규제개혁 추진체계

- (규제관리) 관리적 측면에서 대통령 비서실(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내에 위치한 정보규제실(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은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일부로 규제개혁 및 감독 역할
  -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80)기반 설립
  - 규제의 신규·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규제정책에 대한 막강한 권한 행사를 지님
  - 규제 관련 공무원 교육 및 훈련(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에서 담당(OIRA, 2005)
  - (규제절차) 규제의 신설(변경)제안기관의 내부 심사 →초안심사(Proposed rule-making) 및 최종안 심사(final rule-making) →규제영향분석 →규제 입안기관은 최소한 30일 동안 의견 수렴 → 최종안 발표 시 의견 수렴 내용 첨부 → 최종안 효력 발생 전인 최소 30일 전 공표
  -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경제적 확립성 확보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미국 규제정책의 강점이며, 행정절차법에 의해 규제 입안과정부터 결정까지 공개 → 규제 둘러싼 정부부처 간 이견, 각종 이해관계 의견 조정하여 최종규제결정에 반영

〈그림 4-1〉 미국의 행정기관과 규제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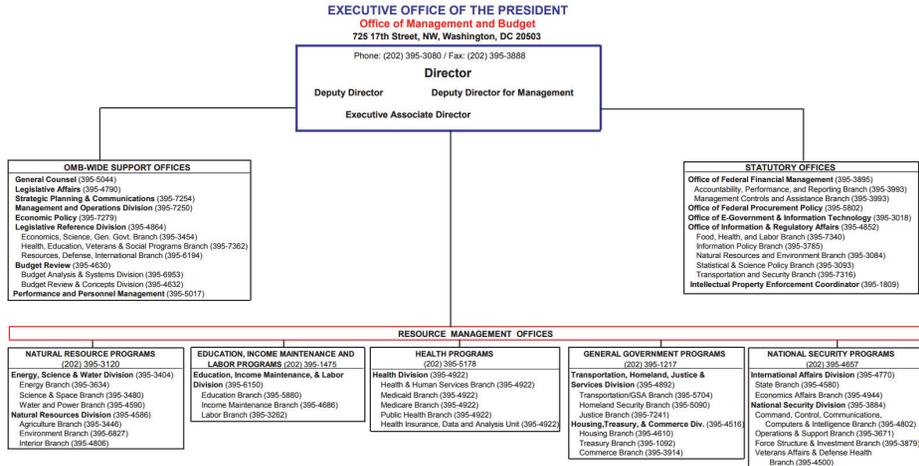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4)「규제제도 및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

□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기구(관리예산처-OMB, 정보규제실-OIRA)

- (관리예산처의 설치 배경 및 목적) 대통령비서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의 한 소속, 행정부 전반의 중복규제의 제거, 규제 예측가능성 확보, 비용 절감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백악관 직속기관, 규제관리의 총괄적 조정 및 감독, 규제의 비용과 효과관리 등 담당

〈그림 4-2〉 OBM 조직도<sup>10)</sup>



자료: 백악관홈페이지

- (관리예산처의 운영) 주된 임무는 집행부 전반의 대통령 비전이행을 감독<sup>11)</sup>, 행정명령 및 선언의 개발, 검토 및 공포에 대한 “5대 핵심 프로세스” 중 하나로 간주
- (정보규제실의 설치 배경 및 목적) 규제의 절차나 방법 등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차원의 검토, 규제검토 및 규제심사 기능
  - (규제검토) 연간규제계획단계, 규제가 등록되기 전 코멘트 단계, 마지막 출판 단계 등 규제 부서 내용과 대통령 정책 또는 통치원리에 일치하는지 확인
  - (규제심사) 규제기관이 규제영향분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관련 정보 지침을 안내 및 제공함. 행정명령 기준에 따라 심사가 수행되며,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의 서류는 대중에 공개

1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omb/assets/about\\_omb/omb\\_org\\_chart\\_0.pdf](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omb/assets/about_omb/omb_org_chart_0.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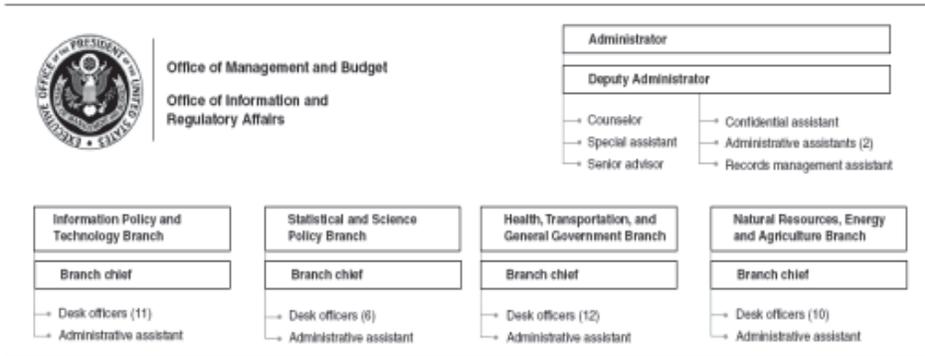
11) <https://www.whitehouse.gov/omb/>(최종검색일 2022.09.15.)

■ 기관 설립 근거

문서감축법(PRA) , 정보품질법(Information Quality Act), 행정절차법(APA), 행정명령(제12866호)

〈그림 4-3〉 OIRA 조직도

Figure 2: Organization of OIRA



Source: GAO.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1). 조직도에서는 4개의 부서 나타남. 이후, 5번째 부서(교통과 보안)가 추가로 설치되어 5개의 부서가 존재

○ 정보규제실의 규제품질 관리

- 영향평가 제도(RIA)

- (배경 및 목적) 1977년의 B/C Analysis에서 1981년과 1993년에 보완·개정되어 현재의 RIA(Regulatory Impact Analysis)로 발전, 행정명령(제12866호)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제안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 OIRA가 중앙규제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검토,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지침 제정
- (절차) 기관내부의 협의를 거쳐 초안 심사(proposed) → 최종안 심사(final rulemaking)

○ 사후 평가(Ex-post evaluation)

- (배경 및 목적) 2011년부터 하위규제(subordinate regulations)에 대

한 사후평가의무화. RIA의 일부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 연계를 강화 (OECD, 2018)

- (절차 및 관리)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규칙제정”에서 OIRA는 규제 내용에 대한 심사에서 핵심적 역할
  - (절차) 각 부처 및 규제기관이 120일 이내에 사전계획을 OIRA에 제출을 요구하나, 실제로는 100일 이내에 사전계획의 초안을 제출하고 OIRA의 검토와 협조를 통해 최종계획을 확정

〈그림 4-4〉 규칙제정(Rulemaking process)



자료: CRS InFocus(2021). An Overview of Federal Regulations and the Rulemaking Process, Updated March 19, 2021 <https://crsreports.congress.gov> | IF10003

- (근거법률) 행정명령(제13563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량적 혹은 정성적 형태의 규제비용편익분석을 규제사후영향평가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평가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 (시민참여) 일반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함. 불필요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특정 규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반면, 평가결과에 대한 별도의 품질관리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

### □ 연방 정부의 규칙 제정 절차

〈그림 4-5〉 The Reg Map



자료: The Reg Map(2020). <https://www.reginfo.gov/>

- 연방정부는 규칙 제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인 규칙 제정 절차(rulemaking process)를 제공
  - (배경 및 목적) 일반적인 경우 규칙 제정 조치는 행정명령(12866)에 따라 특정 유형의 중요한 규제 조치에 대해 제안된 단계와 최종 단계에서 OMB 검토를 포함하여 1단계에서 9단계로 진행
    - OMB 검토와 같이 Reg Map에 설명된 일부 절차는 행정부 기관(즉, 대통령에게 직접 응답하는 내각 부서 및 독립 기관)에만 적용되는 반면, APA 공고 및 논평 요구 사항 및 PRA는 독립 규제 기관(예: 44 USC에 나열된 위원회)에도 적용
  - (Regulations.gov-온라인 규제포털 사이트)
    - 미국 정부가 발행한 연방 규정 및 기타 관련 문서의 개발에 대한 정보의 출처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 의견 제시 가능
    - 제안된 규칙 및 통지가 확정되기 전에 일반 대중이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주로 사용함. 또한 규제 산업, 컨설턴트, 로비스트, 변호사 및 학계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사용됨
    - 연방 규제 절차에 대한 접근 및 참여 창구이며, 모든 시민 제안된 규칙이나 최종 규칙 또는 연방 공보(FR) 통지와 같은 규정 검색,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신청서, 청원 또는 판결 문서 제출 새로 게시된 규정, 곧 마감되는 규정 접근 가능
  - (Regulations.gov-온라인 규제포털 사이트의 의견 제시)
    - 문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댓글"을 클릭하면 댓글 양식이 표시되며, 양식에 의견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한 후 의견 제출
- 절차별 요구사항
  - (Step1-consider initiating events)
    -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법원 결정, 기관 계획 및 우선순위·새로운 데이터, 기술 또는 연구·사고 또는 위반패턴, RFI(정보 요청)에 대한 공개 의견·기존 규제에 대한 소급 분석, 대통령, OMB, 기타 기관, 의회

위원회, 연방자문위원회, 주 또는 외부 그룹의 추천·규제 커뮤니티의 변화·재검토 청원을 포함한 규칙 제정 청원(www.regulations.gov, www.reginfo.gov)

- (Step2-decide whether public notice is needed)
  - APA sec.553은 규칙을 제안하거나 ‘타당한 이유(긴급규칙·잠정적 최종규칙(3~6단계 생략, 9단계 이후 의견 수렴 기간 및 최종 규칙 제공)·기관이 조항을 변경할 재량권이 없는 법적 언어를 성문화하는 규칙·직접적 최종규칙(논쟁의 여지가 없는 규칙에 대한 간소화된 프로세스, 반대하는 경우 철회해야함)·기술적 수정)’를 제시하기 위해 공고 및 논의 요구
- (Step3-develop a proposed rule)
  - NPRM은 CFR(연방규정집) 조항을 추가, 수정, 제거 또는 재지정할 것을 제안함. 제안된 규제 글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제안의 근거와 목적을 알리는 성문으로 구성되어야 함(CFR 18.12참조)
- (Step4-send proposed rule to OMB for review)
  - OMB는 기관 또는 OIRA가 행정명령(12866)에 따라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규칙을 검토함
  - OIRA는 기관 규칙 제정 문서의 행정부 검토를 조정, 중요한 규제 조치에 대해 규칙과 함께 RIA(예:비용-편익평가)를 제출함
  - OMB는 행정명령(12866)에 따라 검토 중인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대중이 요청하는 회의에 발급기관을 요청함
- (Step5-publish the NPRM)
  - 연방기관 조치에 대한 공식 일일 간행문인 ‘Federal Register’에 제안된 규칙의 용어, 내용, 관련 주제와 관련된 설명 게시
  - NPRM은 공개규칙제정 절차의 시간, 장소 및 공공 규칙제정 절차·규칙이 제안된 법적 권한에 대한 참조 규정·규제식별번호 포함
- (Step6-analyze public comments)
  - 대중에게 우편 또는 전자형식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하며, 모든 ‘제시된 관련 문제’를 고려함(APA 553(C)참조). 행정명령(12866)에서는 의견 수렴 기간을 최소 60일로 권장

- 2002년 전자정부법은 기관이 대중의 의견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알람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Pub.L.107-347 sec. 206(d)). Regulation.gov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공개의견 제출
  - 법원은 위에 언급된 APA요건을 기관이 논의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함. 중요한 문제가 채택될 경우, 기관이 제안한 규칙을 변경
- (Step7-develop a final rule)
- 채택된 CFR조항을 제시하고, 기관 결정의 근거와 목적에 대한 간결한 일반 진술을 성문에 통합, 제안된 규칙의 범위 및 “논리적인 진전”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함. 기관이 최종 규칙의 채택 유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대중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는 한 NPRM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
- (Step8-send final rule to OMB for review)
- OMB는 행정명령(12866)에 따라 “중요한”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규칙을 검토함. 기관은 규칙 제정이 중요한 규칙인 경우, 최소 90일 기간을 고려하도록 해야 함(OIRA는 긴급한 상황에서 더 짧은 기간의 검토를 허용할 수 있음)
  - 규제 조치가 연방관보에 게시된 후 검토를 위해 OIRA에 제출된 초안과 이후의 발표와 OMB의 권고에 따른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공개적으로 식별
- (Step9-publish final rule)
- 효력발생일: APA는 기관 규칙이 일반적으로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최소 30일까지 효력이 없을 수 있음을 명시. 단, 예외를 허용하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규칙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는 예외. 일부 또는 모든 규칙 조항에 대해 지연된 발표 날짜(CFR에서 규제 변경이 구현되는 날짜)를 설정할 수 있음. 규칙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지연된 준수 날짜(규제 대상자가 준수해야하는 날짜)를 설정할 수 있음

- Congressional Review Act(5 USC ch.8): CRA에 따라 대부분의 최종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기관은 규칙과 지원정보를 하원, 상원 및 GAO(정부회계감사원)에 제출. CRA에서 '주요'로 정의된 규칙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60일(주요 규칙이 아닌 경우 30일) 동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제3절 영국의 규제해소

#### 1. 규제 개요

##### □ 규제개혁의 목적

- (더 나은 규제) 규제에 대한 증거 기반과 투명성 확보
  - 규제 제안이 기업과 시민 사회 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외부 관점에서 규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영향 평가에 제시된 증거와 분석을 비판적으로 평가
  - 더 나은 규제를 위해 규제정책위원회(RPC)는 정부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견해를 제공하여 기업 및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제한하는 활동함
  -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및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규제 비용 제시
- (규제의 부담의 집중) 이해관계자 및 국제파트너와 협력적 관계
  - 새로운 규제가 비규제 또는 자발적 옵션보다 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관계자가 특정 규정 또는 법률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특히 제시된 영향 평가에 대한 조사에 도움이 되는 해당 영향에 대한 증거 제시
  - 유사하고 같은 이념을 가진 조직과 모범 사례를 교환하여 자국의 규제 변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조사(Reg Watch Europe 네트워크에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및 체코 등과 협력하였으며, 기존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덴마크,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및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의 규제 조사 기관으로 확장되어 자체 규제 조사 기관 설립)
  - 또한 국내 및 초국가적 더 나은 규제 정책의 향상을 위한 OECD의 글로벌 전문가 포럼인 OECD 규제 정책 위원회와 협력

## 2. 규제 정책

### □ 규제개혁 관련 법률

- (1970년 이전) 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가 핵심 산업을 국유화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 시도와 함께 시작된 규제개혁 관심
- (1970-80년대) 규제완화정책을 및 경제적자유화
  - (노동당정부) 산업정책의 실패는 정부규제 비판 초래
  - (대처정부)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경제적 자유화를 통한 정부규제 완화
- (1990-2000년대) 규제완화에서 재규제(re-regulation)로 전환
  - (블레어내각) 시장의 효율성 저해하는 규제 개혁 기조는 유지. 규제품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법률) 1994년 규제완화 도급계약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r Act), 2001년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 (2001년대-현재) 공공협의를 통한 규제집행의 투명성 보장
  - 2000년도에 제정되어 2004년, 2008년에 각각 1차, 2차 개정을 거친 'Codes of Practice on Consultation'. 2008년 'The Regulatory Enforcement and Sanction Act', 2015년 중소기업 및 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도입

〈표 4-2〉 시대별 규제개혁 관련 법률

연대	특징 및 법률
1970 이전 (노동당·대처정부)	• 적극적인 산업정책 시도와 함께 시작된 규제개혁 관심 증가
1990-2000 (블레어내각)	• 규제완화에서 '더좋은규제'를 위한 재규제(re-regulation)전환 - (블레어내각)시장의 효율성 저해하는 규제 개혁 기조는 유지. 규제품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연대	특징 및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1994년 규제완화 외주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r Act), 2001년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li> </ul>
200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완화</li> <li>• 공공협의를 통한 규제집행의 투명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2008년에 공공협의의 진행 의무화 'Codes of Practice on Consultation'. 2008년 'The Regulatory Enforcement and Sanction Act' 제정</li> <li>- (제도)규제완화 및 저비용 조치를 위해 RIA수행, 'One-In, One-Out'('11년), 'One-In, Two-Out'('13년), 'One-In, Three-Out'('16년)도입. 해당 제도 폐지 후, 'Business Impact Target(17년) 도입</li> <li>- (기관)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패스트 트랙 절차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및 저비용 조치(RIA수행)</li> </ul> </li> </ul>

### 3. 규제 체제

#### □ 규제개혁 추진체계

##### ○ 규제개혁 개요

- 규제정책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
- (규제제도) '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로 기본원칙 명문화
  - (관련법령) 1994년 최초로 규제완화와 도급계약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제정, 규제정책 집행의 권한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BRTF, 2005)
  - (중앙-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규제 결정 집행하는 하위 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5년 지방정부차원에서 '더 좋은 규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한 강화 및 역량 집중, 2008년 LBRO(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창설하여 지방정부 규제관련 권한 강화(LBRO, 2008)
- (규제관리) 관리적 측면에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소속기관인 규제개선국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은 더 나은 규제 정책을 담당하며, 규제 정책 프레임 워크의 변화를 촉진 및 제공(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 2015년 중소기업 및 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이 도입되면서 기업분야에 특히 초점 및 투자
  - 패스트트랙 절차에 해당하는 규제완화 및 저비용 조치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예비 및 최종 RIA을 수행함(OECD, 2018)
  -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정기적인 사후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를 수행, 사전 구현 및 검토 단계에서 기업에 중대한 규제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 조치에는 전체 RIA가 포함되어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RPC)에 조사를 위해 제출
- (타당성·투명성심사) 규제감독기관의 일원화로 정부-의회의 균형을 위해 규제입법 및 감독기능 지원 입법위원회(Legislation Committee)설치
- 규제 법률안은 위원회와 L-Committee의 감수 필수. Parliamentary Counsel Office(PCO)에 속한 정부 내 변호사들이 정부입법안 및 정부제정 명령안의 조언 제공(Hood & Scott, 2000)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소속기관인 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은 더 나은 규제 정책을 담당하며, 규제 정책 프레임 워크의 변화를 촉진 및 제공
  -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는 비용 가치연구를 수행하여, 규제 정책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보고함. 의회(Parliamentary)기관은 법적 품질에 대한 법률 초안을 조사하고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 영역을 식별함. 수상 산하 내각부(Cabinet Office)는 입법 가이드 및 입법을 만드는 정부 부처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

- (규제수단)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대하여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 확대하여 규제 외의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 (대상범위)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공공부문 또는 제 3섹터의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도 영향 분석 대상에 포함
  - (행정감축) 2005년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도입
  - (시민참여확대) 전자정부구축을 통한 정부 통합 서비스 전환(Service transformation)
- (규제절차) 일회성 평가가 아닌 정책의제 설정 단계부터 사후평가단계까지 정책 전 단계의 지속적 과정
  - 정책의제설정단계(development stage) → 정책대안식별단계(options stage)의 정책대안 탐색 및 정책대안 실험 수행 → 공공협의단계(public consultation stage)의 정책대안 재검토 및 수정(1차 영향분석:공공협의) → 정책입법단계(final proposal stage) 제안된 정책의 비용-편익 입법여부 결정(2차 영향분석:정책입법) → 집행단계(implementation stage) → 정책평가단계(review stage)의 정책효과 검토(3차영향분석:정책평가)

## □ 규제개혁 추진기구 및 제도 운영

- 독립기관 운영체계: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 (배경 및 목적) 2009년에 설립된 독립적 규제추진기구이며, 비부처 자문 공공기관(NDPB)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재정지원을 받음. 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에 대한 목표관리를 검증하고 승인하며, 사후평가 등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규제의 품질을 관리
  - (권한 및 구속력) 1년에 약 50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직접 만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후원자인 Better Regulation Executive로부터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능)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에 대한 독립적 검증 . 규제품질 관리. 규제개선 정책과 관련 자문 및 조언 제공
- 절차단계
  - 영향평가 준비단계(규제개선 프레임워크 매뉴얼 지침 조언 고려. 재무부 그린북 및 RPC심사사례집(archives 참조) → 제출 전 회의 → 상담단계 제안서 vs. 최종단계 제안서 → 제출 후 프로세스(사무국 위원 2인 이상 심사) → 심사의견발행(통상근로일 30일 이내 RPC의견 받아야 함)
  - \* 상담단계제안은 비공식 조언 또는 공식적인 전체 조사경로, 최종단계 제안은 공식적 전체 조사경로

〈표 4-3〉 최종단계 영향평가

초기 검토 공지(IRN)	적색 등급	녹색 등급
IA는 RPC에 처음 제출된 대로 목적에 맞지 않는다. IRN이 부서에 발행된 후 증거 및 분석의 품질에 대한 주요 우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적색 등급이 발생할 수 있다. IRN은 비공식적인 조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시되지 않는다.	IA는 IRN에 대한 부서의 응답에 따라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 RPC는 증거 및 분석의 품질과 해결해야 하는 IA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주요 우려를 유지한다. 적정 평가 의견은 공식적이며 해당 IA가 게시되면 게시된다.	A는 목적에 적합하다. RPC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위치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선에 대한 부서가 고려해야 할 많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녹색 등급의 의견은 공식적이며 해당 IA가 게시되었을 때 게시된다.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1)

- 기타기구: 규제개선팀(Better Regulation Unit: BRU), 규제완화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RRC) 등이 대표적으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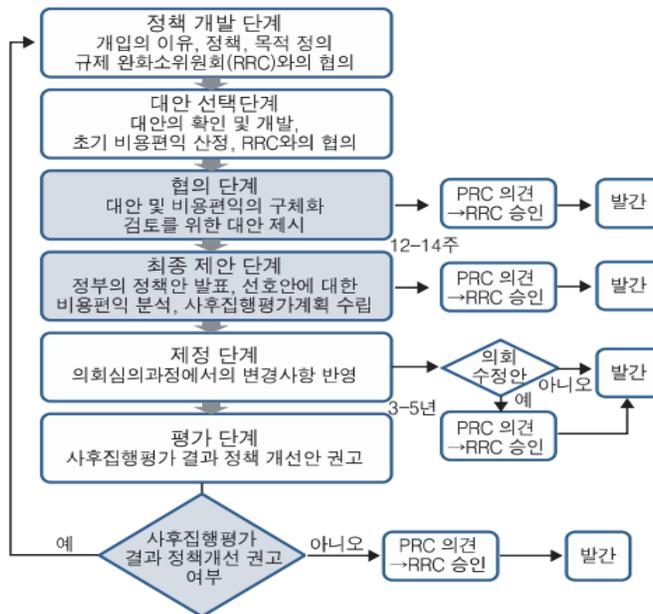
□ 규제품질 관리

- 영향평가 제도(RIA)
  - (배경 및 목적) 1998년 기존의 규제순응비용평가(Compliance Cost Assessment: CCA)를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로 전환하면서 제도 강화, 규제영향평가의 일환으로서 규제사후영

향평가에 대한 접근 시도(OECD, 2002, p.42)

- (법적근거) 2001년 규제개혁법을 대체한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에 포함

〈그림 4-6〉 영국 영향평가 단계



자료: 영국 영향평가지침(Impact Assessment Guidance)에 소개된 Impact Assessment Flowchart를 요약 정리한 장민선(2012) 재인용

### ○ RPC의 역할

- (특성) 영향평가(IA)를 작성해야 하는 단위는(한국과 같이 개별 조문단위가 아니라) 정책단위로 이루어짐. 부처에서는 영향평가(IA) 작성 회피를 위해 분석 단계를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IA) 작성단위 설정에 대해 규제정책위원회(RPC)가 관여함(KDI 출장보고서, 2018, p.14)
- 초기 검토 통지(IRN): RPC에 처음 제출된 IA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

음. IRN이 부서에 발급된 후 증거 및 분석의 품질에 대한 주요 우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적색 등급이 부과될 수 있음. IRN에는 비공식적인 조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시되지 않음.

- 레드등급: IA는 IRN에 대한 부서의 대응에 따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RPC는 해결해야 할 증거 및 분석의 품질과 IA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주요 우려를 유지함. 적색 등급 의견은 공식적이며 해당 IA가 게시되면 게시됨.
  - 녹색등급: IA는 목적에 적합. RPC에는 큰 문제가 없거나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부서에서 고려해야 할 개선점이 많이 있을 수 있음. 녹색 등급 의견은 공식적이며 해당IA가 게시되면 게시됨.
- (절차) 정책개발과 대안선택 단계(1단계) → 협의 및 최종안 선택단계(2단계) → 집행 사후평가단계(3단계)

#### ○ 사후 평가(Ex-post evaluation)

- (배경 및 목적) 규제영향평가 단계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는 평가 단계(review stage)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규정되며, 집행된 규제정책에 대한 실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사후평가(를 수행함.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앞서 평가결과에 따른 규제정책의 목적 및 집행과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U.K. BIS, 2015a, p.58)
- (평가주체 및 대상범위)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가 평가의 주된 수행 주체로 역할을 담당함. 소관부처 내 규제개선팀(Better Regulation Unit: BRU)이 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함. 평가의 대상범위와 관련해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이해함
- (절차 및 관리) 주된 규제법령이 제정된 3-5년 이후에 평가 단계에 도달할 경우 수행됨. 반면 일몰 및 재검토 조항에 따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시점에 따라 평가의 시점이 결정됨. 평가 주기는 일몰 및 재검토 조항이 포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 5년마

### 다 재검토를 수행

- (절차) 사전적 규제영향평가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품질관리가 적용
- (근거법률) 규제정책의 지속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규제일몰제도(Sunset law) 채택
- (시민참여) PIR 템플릿은 GOV.UK.에서 확인 가능. 검토에 대한 법적 지침은 검토 조항을 포함할 시기에 대한 조언 제공, 구현 후 검토 제작: 모범 사례의 원칙을 참조가능
- (정보공개) 내각부의 개방형 정책 수립 툴킷(Cabinet Office's Open Policy Making toolkit)에는 구현 후 검토에 유용한 원칙을 설명하는 개방형 정책 수립의 영향과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섹션이 포함. 재무부(HM Treasury)의 Magenta Book - Guidance on Evaluation 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

### ○ 기타 제도: 규제비용관리제도 및 기업영향목표

- 규제비용감축목표제는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one-in-one-out 제도를 도입(2011~2012). 이후 one-in-two-out 제도(OITO)를 2013~2014년에 실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 비용을 감축토록 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전환하여 실시(한국행정연구원, 2021)
-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BIT)란 정부가 회기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규제 비용 감축 목표치(기업의 직접비용 완화 분)를 제시하고 규정 재개정을 시행한 뒤 회기가 종료할 때마다 보고서 제출 필요
  - (법률) 중소기업 및 고용에 관한 법률(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에 따라 도입

## 제4절 일본의 규제해소

### 1. 규제 개요

#### □ 규제개혁의 목적

-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을 제시하였음. 특히 지역단위 규제개혁으로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우위를 갖춘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에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과 세제혜택 제공 등 Top-down 방식의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실시

### 2. 규제 정책

#### □ 규제개혁 관련 법률

-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본법이 없이 개별 법령과 정책에 의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특별히 규제에 대한 정의나 규제절차 등을 일괄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음
  - 「行政機關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行政機關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년 政令 제323호), 「行政機關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07년 총무성령 제95호)의 시행령 상의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들 중에서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3조 6항에서 정함(김신 외, 2009)
- (법률)2013년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규정한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 관련 9개 법안을 제출
- 2014년 1월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책정. 동년 6월에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 미래를 향한 도전을 각의에서 결정

〈표 4-4〉 규제법률 개정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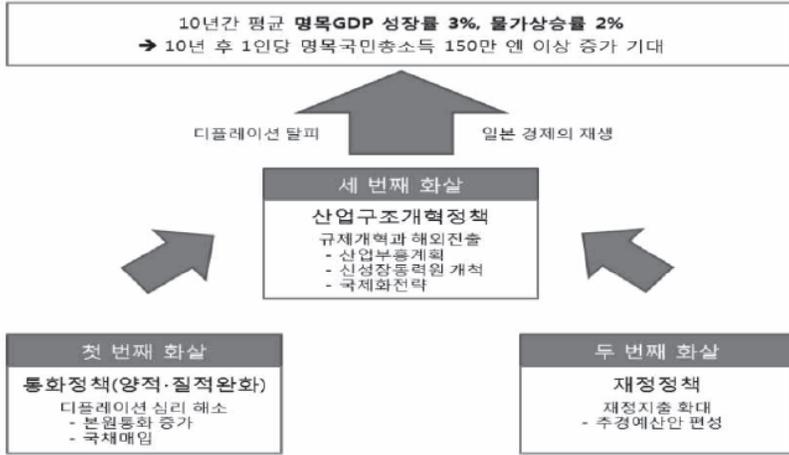
연대	특징 및 법률
1990-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극복을 위해 구조개혁</li> <li>• (법률)2001년 政令 제323호 및 2007년 총무성령 제95호, 2007년 4월 1일에는 「의견공모수속」을 정하는 행정수속법을 개정</li> </ul>
2010년대-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일본재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li> <li>• (법률)2013년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규정한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 관련 9개 법안. 2014년 1월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책정. 같은해 6월에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일본재흥전략 개정</li> <li>• (기관)'일본경제재생본부' 설치. 산하에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li> </ul>

### 3. 규제 체제

#### □ 규제개혁 개요

- (규제수단) 2017년 '행정부담경감 기본 프로그램' 및 규제 시행지침을 개정 하였고 상호작용형 웹사이트를 운영
  - (행정부담경감 기본프로그램) 일본 활성화전략 (Japan's Revitalization Strategy(2016)연계되어 2019년까지 프로그램 목표 달성 위해 규제 및 제도개혁의 새로운 틀과 원칙, 메커니즘 도입 목표(OECD, 2018)
  - (규제 시행지침 개정) 2007년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기법과 프로세스를 포함 영향과 비용의 정량화, 적격화 관련 정보와 기준을 구체화. 시행 후 5년 이내 규제사후평가의 필요성 명확히 규정
  - (상호작용형 웹사이트 운영) 대중의 영향평가와 같은 문서에 액세스 및 하위 규정 초안에 의견제공. 공개온라인 협의를 통해 일차 법률개발 과정으로 확장하고자함(OECD, 2018)

〈그림 4-7〉 일본의 행정기관과 규제관리 체계



자료: 임준환 외(201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규제관리)일본의 규제 정책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관이 포함
  - (규제 개혁 추진위원회과 내각실에 설립 된 총리의 자문위원회). 기관의 기능은 구조 개혁에 필요한 규제 문제를 조사 및 총리에게 권고안을 제출
  - (내무부 행정평가국)주요기능은 RIA 및 전 사후 평가를 계획, 관리 및 조사. 이에 대한 지침 및 플랫폼 수립을 수행하는 기관
- (타당성·투명성심사) 규제개혁추진협의회, 총무성 행정평가국(AEB), 일본 공정 거래 위원회(JFTC)가 대표적 기관
  - 규제개혁추진협의회는 정부 내각 내에서 일하며 규제개혁 촉진을 책임 짐. 위원회는 또한 총리의 요청에 따라 시행 중인 규제 개혁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한 객관적인 권장 사항을 제공
  - 총무성 행정평가국(AEB)은 사전 및 사후 평가를 감독, 계획 및 관리하며, 이러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플랫폼을 수립함. AEB는 또한 내각 의 감독하에 부처 지침 및 정책 평가에 대한 공통 규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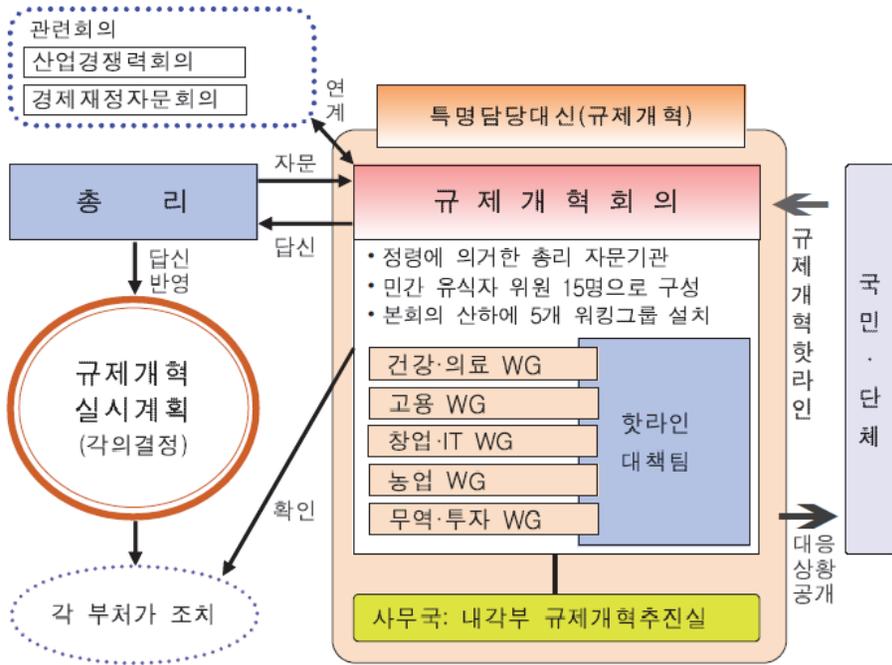
- 일본 공정 거래 위원회(JFTC)는 경쟁과 관련된 평가 및 평가를 검토하는 AEB를 지원함. 정부 부처 및 기관은 특정 유형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체크리스트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또한 JFTC는 이 평가를 수행하는 부처와 기관에 체크리스트와 지침을 제공
- (저성장시대 규제개혁) 2001년 6월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경제가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와 함께 구조개혁을 강조
- (제 2차 아베 정권기본정책) 제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혁으로 2013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일본재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을 각 의에서 결정
  - (기동적 재정정책) 2013년 1월에 13조엔 규모의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 결정 이후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내세움
  - 경제재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내각에 '일본경제재생본부' 설치. 산하에는 '산업경쟁력회의' 설치
  - 일본재흥전략 개정판의 중점분야: 2014년 6월 발표한 '일본재생전략 개정 2014'에서는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건강·의료·고용·창업·농업·무역·투자 등을 제기했음. 특히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강한 농업, 의료, 고용에서 규제 '암반' 제거를 선언
  -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국가전략특구를 도입, 국제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참가 등을 제시,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과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을 추진을 방침,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원전 재가동을 추진

#### □ 규제개혁 추진기구 및 제도

- 규제개혁추진협의회(The Council for Promotion of Regulatory Reform)
  - (목적 및 근거법령) 내각부(內閣府, Cabinet Office)내 활동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OECD, 2018)

- 설치근거법령은 내각부 본부 조직령 제32조
- 사무는 경제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총리의 자문에 따라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제의 위상개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의할 것,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총리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 등임(조직령 제31조)
- 조직은 15명 이내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규제개혁회의령 제1조), 위원과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총리가 임명함(회의령 제2조)
- 규제개혁회의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설명 등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회의에서 요청할 경우 총리는 관계부처에 협력을 요구 가능(회의령 제5조)
- (역할)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혁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객관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함(OECD, 2018)
  - 규제완화는 1995년 「규제개혁추진계획」이 책정된 이래, 1995년부터 3개년 계획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심사에 관해서는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워킹그룹으로 구성. 2015년 1월 말까지 매달 1~3회 열려 2년간 모두 40회 개최되었으며, 워킹그룹도 매달 1~3회 정도 열리고 있음

〈그림 4-8〉 규제개혁 추진구조



자료:內閣府(2014). 內閣府: 組織・業務の概要2014, p.53. 한국행정연구원(2021)재인용.

○ 총무성 행정평가국(AEB)

- (배경 및 목적) 총무성(總務省,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내 의 행정평가국(AEB)은 사전/사후평가의 감독, 기획, 관리를 담당하며 이러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플랫폼 수립(OECD, 2018)

- AEB는 내각주관으로 부처 가이드라인과 정책평가 공통규칙이 포함된 각종장관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정책들을 검토(OECD, 2018). 전국 50개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1) 행정평가국 조사, (2)정책평가, (3) 행정상담 실시

### ○ 공공협의 관련 제도

- 일본의 중앙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함. 그리고 해당 규제를 확정짓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도 규정. 2015년 OECD 국가 일본 profile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공공협의관련 제도로는 “규제개혁 핫라인”이 있음(OECD, 2015)

### ○ 규제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

- (목적)정책을 담당하는 부·성·청이 평가하고, 일부의 사례에 관해 총무성(總務省,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이 평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RIA도 그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음
- (특성) 일본의 RIA의 실시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면, ① 규제의 목적, 내용 및 필요성의 설명, ② 규제의 비용 추계, ③ 규제의 편익 추계, ④ 정책평가의 결과 제시(비용과 편익의 관계의 분석·대체안과의 비교), ⑤ 전문가의 견해, 그 외 관련사항 제시, ⑥ 재검토를 수행할 시기와 조건
  - RIA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규제의 신설, 폐지시 규제의 사전평가(RIA)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정책의 시행 단계별로 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규제의 재검토를 수행하는 취지의 조항(위의 ⑥ 재검토 조항)을 포함
  - 이러한 재검토 결과 그 제도의 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근거 등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음(Ibid., pp156)

### ○ 기타기구: 규제개선팀(Better Regulation Unit: BRU), 규제완화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RRC) 등이 대표적으로 존재함-법적으로 규제기관(regulator)의 역할을 수행하는 약 70개의 독립적인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bodies)이 존재

## 제5절 호주의 규제해소

### 1. 규제 개요

#### □ 규제의 개념과 목적

- 규제는 사회와 경제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며, 규정에는 준수가 기대되는 법률 또는 기타 정부 승인 ‘규칙’이 포함됨
- 호주에서 규제는 법률 및 하위 법률의 형태로, 그리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및 부칙으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짐
- 호주 정부와 정부 간 의사 결정 기관은 기업, 지역 사회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제의 질을 개선

#### □ 규제개혁 배경

-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규제개혁 노력을 계승하여 규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규제완화에 중점 개별 규제 안전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중점, 2014년부터는 규제 부담 감축(regulatory burden reduction)에 목표를 두었음
- 규제영향진술서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정부의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함
  - 정책에 대한 혁신, 분석의 공정성, 더 나은 결과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로서 호주 규제관리 체계 중심
  - ‘재정 및 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DFD) 주도하여 연방정부의 규제 개혁 및 관리 중심
- 2014년 토니애벗(Tony Abbott)총리 정권부터 호주연방정부 규제관리는 총리 내각부(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 PM&C)로 이관. 실무적 기능은 규제완화실(Office of Deregulation: OoD)와 규제합리화실(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OBPR)에서 전담

- 현재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총리 정권은 2022년 11월 18일에 The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모범사례규제사무국) →The Office of Impact Analysis(영향분석사무국) 부서명 변경

## 2. 규제 정책

### □ 규제개혁 관련 법률

- ‘관습법’이 주를 이루는 호주의 법률 체계는 영국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가, 특히 영연방 국가와 미국에서 계승된 모델에 기반
-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이 규제개혁을 위해 호주정부가 제정한 독립된 법률 없음
  - 호주의 규제개혁은 개별 법률과 정부 간 합의 및 협약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에 의해 추진됨
  - 규제가 연방 차원에서 주 및 준주에서 입법 및 하위 법률의 형태로, 그리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규정 및 조례로 이루어짐. 주정부와 준주정부의 경우 COAG(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의 협의에 따라 도입
  - 연방제 국가로서 호주는 자치헌법을 가진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됨. 주정부는 주관할 하의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입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연방 정부의 규제개혁 못지않게 주정부의 규제개혁 또한 중요함. 주정부의 규제개혁은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주정부와 준주정부 또한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들 존재
  - 다음과 같은 법들이 각 주별로 설치된 규제일몰제를 두고 있는 법률이다. Acts Interpretation Act 1931 (Tas), Interpretation Act (NT), Interpretation Act 1984 (WA), Legislation Act 2001 (ACT), Legislative Instrument Act 2003 (Cth), Statutory Instruments Act

1992 (Qld),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78 (SA),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89 (NSW),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Vic).

#### □ 규제개혁 관련 정책

- 1970-1980년대: 경제성장 시기, 규제개혁의 초점은 우선 호주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규제개혁, 산업에 대한 관세를 감축/철폐, 국제시장에 호주를 노출시키는 노력
- 1990년대 초에서 중반: 미시경제 개혁과 국가경쟁력정책(National Competition Policy: NCP)과 관련됨. NCP 개혁은 연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정부가 참여를 시도함. 광범위한 법제를 평가해 이후 도입된 규제 영향분석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정부기업에 대하여 Trade Practice Act(1974)를 적용

##### National Competition Policy

- Initiated by the Hilmer report in 1993;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국가 경쟁 정책의 명시된 목표는 경쟁 제한을 최소화하고 경쟁 중립성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개혁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호주가 누렸던 강력한 경제 성장 기간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

- 2000년 중반 이후: 과학적이고 증거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측정하는 규제영향분석 실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의회(COGA)의 규제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를 구축
  - 호주 정부 위원회: 빅토리아 정부 제안(Bracks, A Third Wave of National Reform, 2005)과 영연방을 위해 준비된 보고서(Banks, Rethinking Regulation, 2006)의 영향 받음
    - 개혁과정에 건전한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을 필수적으로 고려
    - 호주 정부 위원회의 역할: 사업규제; 국가 파트너십 계약; 성과 모니터링-COAG 개혁 위원회
  - 규제 개혁 GOAG(호주정부위원회) 원칙
    - 1994년 2월 COAG(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에 제출

한 보고서에서 규제 개혁 위원회는 호주의 국가 표준 설정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함. 이 문제에 대한 고려는 호주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호주의 규제 시스템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1992년 9월 주요 비즈니스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해 처음 시작됨. 규제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지연, 불일치 및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추가 비용을 생성하고 위험 감수 및 기업을 억제한다고 제안함

- 호주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준주정부가 함께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 (COAG)를 설치하고 있으며, COAG는 NCC를 두어 규제개혁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총규제비용절감제(red-tape reduction)과 규제개혁성과관리(regulation performance framework)
- 규제철폐 계획(Cutting Red Tape) 발표(2014)
  - 2014년 3월 26일을 ‘2014 Autumn Repeal Day’로 정하고 규제철폐법안(Deregulation Bills)을 상정함. 규제철폐전담기구(Deregulation Unit)가 설치됐으며, 이 기구는 오래된 법을 폐지하고 정책입안자가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를 실시하는데 도움([https://webarchive.nla.gov.au/awa/20151020001736/http://www.cuttingredtape.gov.au/\(Cutting Red Tape\)](https://webarchive.nla.gov.au/awa/20151020001736/http://www.cuttingredtape.gov.au/(Cutting Red Tape)))
- 규제권한(Regulatory powers)
  - (배경) 2011년에 OPC(의회 고문실)는 범죄 또는 민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는 각 법안에 규제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 조항 간의 차이를 증가시키고,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우려를 제기함
  - 이 문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은 영연방 법령집 전체에서 공통 조항의 사용을 늘리는 것임. 법무장관실(Attorney-General’s Department: AGD)는 연방 법률의 양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OPC 및 관

런 기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일반 적용법인 규제 권한법을 만들기로 합의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명확한 영연방 법률 (‘Clearer Commonwealth Laws’) 이니셔티브의 일부임

- OPC는 이미 Commonwealth Statute 책자에 있는 광범위한 체계에 걸쳐 기존 규제 조항을 분석했음. 일반 적용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표준화할 수 있는 일련의 핵심 규제 조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 그 결과 여러 규제 체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조항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권한법(Regulatory Powers Act)의 초안이 작성됨

#### - 규제 권한법

- 규제 권한은 정부 기관과 규제 기관이 개인과 산업이 입법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준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한임. 규제권한법(Regulatory Powers Act)의 맥락에서 이러한 권한은 강압적 권한과 집행 권한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며 다음을 포함함
- 법률 조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연방에 제공된 정보가 올바른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권한(2부), 범죄 또는 민사 처벌 규정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조사 권한(3부), 민사 처벌 명령 및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4부 및 7부), 입법 조항 준수와 관련된 약속의 집행을 수락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한(6부)
- 감시 및 조사 권한의 형태로 강제 권한은 민사 처벌 또는 위법 행위가 적용되는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모니터링 또는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승인된 사람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여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위반 시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함. 집행 권한은 일반적으로 강압적 권한이 사용된 후에 사용되며 침해 통지 발행, 민사 처벌 명령 또는 금지 명령 신청 또는 집행 가능한 약속 체결을 포함할 수 있음
- 규제권한법(Regulatory Powers Act)은 민사 처벌, 침해 통지, 집행 가능한 약속 및 명령을 통한 집행 조항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조사 권한과 관련된 표준 조항을 제공함.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에 시작

되었지만 해당 조항을 발동시키기 위해 영연방법이 초안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 규제권한법(Regulatory Powers Act)의 표준 조항은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중요한 관습법상의 특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 또는 집행 규제 체제에 필요한 권한의 허용 기준선임. 규제 권한법에 따라 가능한 종류의 모니터링, 조사 또는 집행 권한을 요구하는 신규 또는 개정 법률은 반대되는 강력한 정책적 이유가 없는 한 해당 법률의 관련 조항을 발동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해야 함. 행정법 부서는 규제 권한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유형의 모니터링, 조사 또는 집행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입법 제안에 대해 협의해야 함
- 규제 권한법 개정안(Amendments to the Regulatory Powers Act, 2021)
  - 기존의 규제 권한 및 표준조항법(Regulatory Powers(Standard Provisions) Act 2014)을 규제 권한 및 표준화 개혁법(Regulatory Powers (Standardisation Reform)Act 2021)으로 부분 개정함(2021년 3월 27일)
  - (문제 모니터링) 조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 문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 2021 개정안은 특정 입법 조항을 직접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기관 또는 규제 기관의 권한을 확장함. 규제 기관은 문제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법률 위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패턴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규제권한법은 조항을 구현시키기 위해 법률이 초안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확장된 범위는 조항이 모니터링 대상의 특정 문제를 지명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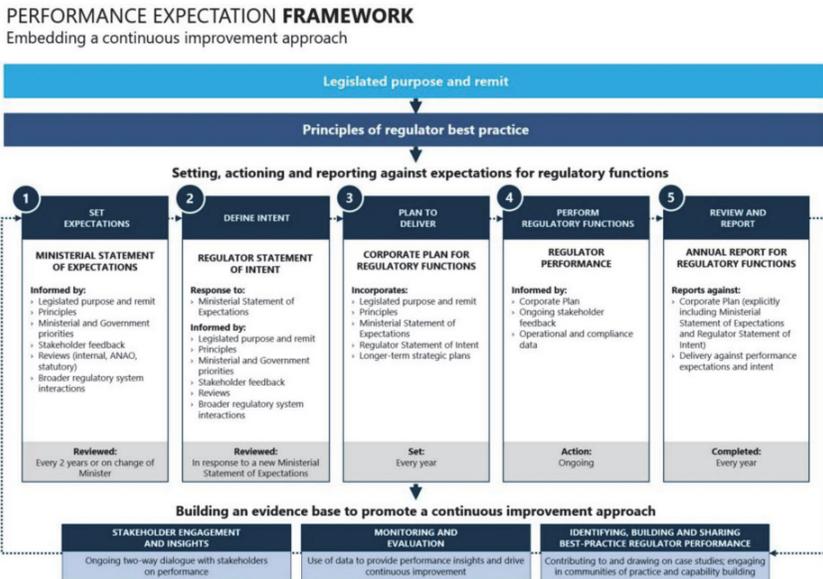
### 3. 규제 체제

#### □ 총리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PM&C)

-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규제 기관과 지역 사회에 더 나은 결과 보장을 목표와 함께 COVID-19 이후에는 다른 관할권 및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의 경험을

- 포함하여 비즈니스, 규제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함
  - 최근 2022년 4월 총리 내각부는 호주 정부 규제 기관 및 규제 기능에 대한 재고 조사 발표
  - 95개의 규제 기관 또는 규제 기능을 식별하여 정부 전반에 걸친 규제책임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재고 조사는 Ministerial Statements of Expectations(SOEs)와 Regulator Statements of Intentions(SOIs) 발행에 대한 가시성을 공개 문서에 대한 링크와 함께 제공
  - 규제 기관, 정책 부서 및 이해 관계자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유용한 리소스인 재고 조사는 포트폴리오별로 각 규제 기능, 이러한 기능이 부서 내부 또는 외부인지 여부, 관련 법률 및 규제 커뮤니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식별할 예정
- (활동-레귤레이터 모범 사례 및 성과) 호주 정부 규제 기관 재고 조사, 규제 기관의 성과 및 책임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회수 검토, 전문 규정 파일럿 프로그램의 우수성, 모범 사례 라이브러리; 레귤레이터 성능 가이드 및 지원 자료

〈그림 4-9〉 Regulator Performance



- 레귤레이터 모범 사례 및 성과
  - (원칙1-지속적인 개선 및 신뢰 구축) 규제 기관은 전체 시스템 관점을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성능, 역량 및 문화를 개선하여 호주의 규제 환경에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
  - (원칙2-위험 기반 및 데이터 중심) 규제 기관은 위험을 비례적으로 관리하고 필수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고 성장하도록 지원
  - (원칙3-협업 및 참여) 규제 기관은 현대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이행하는 투명하고 빠른 대응
  
- 모범사례규제사무국(The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OBPR):현재 OIA로 변경
  - OBPR은 영향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영향 설명(RIS)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
  - 정책 개발 주기의 모든 단계에 있는 기관은 OBPR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입법 수단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할 때 OBPR와 협력
  
- 영향분석-(The Office of Impact Analysis: OIA)
  - OIA(Office of Impact Analysis)는 정부 정책 및 결정이 가능한 최상의 증거 및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노력
    - 총리 및 내각 부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일상적인 독립성을 유지
  - (역할)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복잡한 정책 문제에 대한 상세하고 증거 기반 평가를 생성. 당면한 정책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 옵션의 장단점 분석을 포함하는 영향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지도
    - 궁극적으로 초점은 증거 및 분석의 품질에 두며, 영향 분석을 게시하고 품

### 질 및 규정 준수에 대해 공개적 보고

-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기반 개발) 새로운 정책 제안이 총리, 내각 또는 의사 결정 포럼에 제출될 때마다 정부는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하는데 영향 분석을 통해 확립
  - 영향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자가 제안된 정책이 다룰 문제, 영향을 받는 사람, 영향을 받는 방식, 정부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제시
- (영향분석 프로세스) 정부의 영향 분석 프레임워크는 정책 입안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위해 분석하며, 필요한 분석의 프로세스와 수준은 제안의 중요성과 영향에 따라 다름
  - 1단계: 예비평가-영향분석의 필요 여부 결정
    - 개요-영향이 경미한 것 이상인지 평가하며, 평가는 다음을 고려함. 문제의 잠재적인 규모는 무엇인지, 제안된 옵션의 특성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지, 개인·기업 및 지역 사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잠재적인 비용 부담 또는 절감 효과는 무엇인지,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 과정- 1a) 기관은 예비평가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정보 제공. 또는 기관에서 정책 제안 버전 보낼 수 있음. 1b)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IA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분석 깊이 알림. IA를 완료해야 하는지 여부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알림

<그림 4-10> 영향분석 예비 평가 양식



출처: The Office of Impact Analysis (2022)

<그림 4-11> 예비평가 절차



- 2단계: 조기평가(선택사항)

- (개요) IA의 품질과 상담 또는 최종이 아닌 주요 결정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 진행, 7개의 영향 분석 질문 중 처음 4개를 완료하고 상담 프로세스를 계획한 경우 조기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조기 평가를 위해 IA를 제출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적극 권장됨
- (평가고려사항) 제공된 정보가 제안의 규모와 범위에 비례하는지 여부, 정보가 협의 또는 주요 최종 결정이 아닌 결정에 충분한지 여부,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옵션을 고려했는지 여부
- (과정) 초기 평가는 처음 4개의 IA 질문(규정 준수 비용 정량화 포함)을 완료하고 상담 프로세스를 계획한 후 수행됨. 조기 평가를 위해 IA를 제출할 때 차관, 비서 또는 최고 경영자의 서명 후 공개

〈그림 4-12〉 7가지 영향분석(IA) 질문

〈그림 4-13〉 초기평가 증명서

출처: The Office of Impact Analysis (2022)

- 3단계: 최종평가-정부의 영향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최종 IA를 평가
  - (개요) 최종 평가 IA는 7가지 영향 분석 질문을 다루고 차관 또는 동등한 대리인이 승인함. 최종 평가는 최종 결정 지점 또는 공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최종 평가는 2단계 프로세스(1차 및 2차 통과 평가)임. IA는 4가지 평가 계층에 따라 평가됨: 모범 사례; 좋은 연습; 적절; 불충분
  - (과정) 3a) 1차 통과-기관은 7가지 영향 분석 질문을 모두 다루는 IA를 제출, 3b) 1차 통과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분석 및 프로세스의 품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제공, 3c) 2차 통과 - 기관이 IA를 업데이트하고 최종 평가를 위해 IA를 다시 제출, 3d) 2차 통과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최종 평가를 제공하고 최종 IA가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

- (4단계) Publish -IA는 최종평가와 함께 게시: 정책 또는 조치의 공개 발표 후 최종 IA(3c.) 및 평가(3d.)공개
- (5단계) 사후검토: (추가 요구 사항에 따름) 특정 상황에서는 구현된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현 후 검토(PIR)를 확인
  - (개요) 호주 정부 기관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 시행 후 검토(PIR)를 수행함. 영향 분석(IA) 없이 규제가 도입, 제거 또는 크게 변경된 경우에도 PIR을 준비해야 함. 이는 최종 결정을 위해 적절한 IA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총리가 IA 요구 사항의 면제를 승인했기 때문일 수 있음. 이 지침서는 PIR의 목적, 프로세스 및 내용 요구 사항을 설명
  - (과정) 5a)PIR이 필요한 경우 공지, 5b) 기관은 규정이 원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7가지 영향 분석 질문을 모두 다루는 PIR을 제공, 5c) 최종 평가와 PIR 제공

##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 □ 규제개혁흐름의 특징

- 각국은 기존 규제가 국정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공통적 관점에서 기업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규제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함
  -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를 정보규제실(OIRA)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초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고 규제법정주의를 명문화하였으며, 기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 해당 내용을 공고 후 의견수렴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함
  - (영국) 국가 내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의 기초에 따라 산업정책의 전환을 위한 규제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규제완화 도급계약법, 규제개혁법, 입법 및 규제개혁법 제정이 시도됨
  - (일본)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과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시도함. 이를 위해 행정부담경감 기본 프로그램 및 규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추진위원회와 내각실 내 총리 자문위원회에서 추진
  - (호주) 경제 회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를 지향하고자 총리 내각실을 중심으로 규제 기능을 식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
- 규제분석의 특징
  - (미국) 국가경쟁력 확보 및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분석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규제 도입 및 개선의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개선을 위해 편익비용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적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음
    - 규제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것은 최종안 발표 시 의견 수렴을 명문화

- 하였으며, 최종안 발표시 해당 의견 내용도 첨부함
- 규제 입안과정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고, 특정 규제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발생시 의견을 조정하여 최종규제를 결정
  - 규제영향평가제도(RIA)를 통해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일반시민이 참여 가능함
- (영국)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부처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소속기관인 규제개선국(BR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정책위원회(RPC)에 제출함
- 규제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감사원(NAO)은 비용 및 가치연구적 입장을 표명하고, 의회는 법적 품질에 대한 법률 초안 조사함
  -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대하여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와 집행된 규제정책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함
- (일본) 내각부 본부 조직령에 따라 규제개혁추진협의회 및 총무성 행정평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협의 관련 제도를 통해 다면적인 의견을 취합하고 있음
- 규제영향평가의 내용은 ① 규제의 목적, 내용 및 필요성의 설명, ② 규제의 비용 추계, ③ 규제의 편익 추계, ④ 정책평가의 결과 제시(비용과 편익의 관계의 분석·대체안과의 비교), ⑤ 전문가의 견해, 그 외 관련사항 제시, ⑥ 재검토를 수행할 시기와 조건
  - 공공협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OECD에는 규제개혁 핫라인으로 소개되고 있음
- (호주) 과학적이고 증거기반에 의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영향진술서를 시작으로 규제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 없이 입법절차조차 진행할 수 없는 제도화를 추진함
- 규제철폐법안을 상정하여 규제철폐전담기구가 설치되었으며, 오래된 법을 폐지하고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최근 규제권한법을 개정(2021)하여 규제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입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 □ 시사점

-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제도 전환
  - 규제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를 단행하여 절차를 품질관리에 주목함
  - 규제 대상에 있어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대상으로 규제 완화로 이어지나 최근에는 다문화나 양성평등 새로운 행정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됨
  -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제공하여 규제개선의 건의를 청취하는 개선의 의지와 함께, 시기적으로 초기의 경우 단일행정기관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얻는 것이 필요함
- 규제문제의 범위 확대에 의한 규제영향분석방법의 전환 필요-정량분석과 정성분석 병행
  - 기존 규제행정의 문제는 규제개선을 통한 비용편익적 관점을 통해 정량적 분석이 추진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나 양성평등(여성) 비용편익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규범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성적 평가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고 제도 마련이 요구됨
- 공공협의과정에서 개방된 의견수렴의 기회 제공
  - 규제란 국가(정부)가 개인이나 조직에게 행위를 제한하는 법과 규칙으로서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제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를 위해 규제해소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영향권에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기업 및 주민 등 의견청취 경로의 확보가 요구됨
  - 이러한 과정이 갖는 의미는 규제의 개인과 조직의 행위 제한에 대한 정당성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민주성 확보와 투명성 등 정부신뢰 차원에서 검토될 부분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리 및 규제개혁문화 조성
  -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중앙정부의 경우 시기적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정량적 규제분석과 정성적 규제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방정부를 총괄하는 중앙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타 부처와 조정 및 협의, 권고의 역할로 이어지길 기대함
  -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강화가 요구됨
  - 이렇듯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리에 따른 규제개혁활동과 규제해소의 문화가 조성되어 규제개혁 이니셔티브를 제도화하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균형발전적 관점에 따른 규제영향분석·평가법 필요
  - 각국의 규제해소를 위한 공통적인 방향은 비용·편익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분석을 추진 중
  - 규제영향분석·평가에 있어 경제적 분석은 의미있는 효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현재 인구감소 및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부재
  - 2004년부터 도입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균형발전적 관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따라서 균형발전적 접근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평가법의 지표 및 매뉴얼 등 관련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규제해소를 위한 주체의 변화 필요
  - 일반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은 대통령실 및 중앙정부의 독립적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됨
  - 이러한 Top-Down 형태의 정책 추진은 최근 글로벌지방시대와는 배치

되는 방향으로 Bottom-Up 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논의가 필요함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에 따라 규제해소 주체 변화가 필요함(중앙정부→지방정부)

○ 효율적인 규제해소 운영을 위한 플랫폼 및 전달기구 필요

- 현재 규제해소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운영 중인 소통창구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https://www.osmb.go.kr/>)임
- 그러나 규제해소의 투명한 운영과 규제제안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일된 플랫폼 또는 전문화된 균형발전적 관점의 플랫폼이 부재함
- 특히, 균형발전적 관점을 가진 규제기획·심사와 규제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리하면, 규제해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성, 접근성,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

- 규제해소를 해외의 동향은 비용·편익의 경제적 분석에 따른 규제부담 완화의 기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균형발전과 인구감소관련 법안과 정책이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존 경제적 분석과 다른 균형발전적 관점에 따른 규제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규제분석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규제해소 제안 소통창구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이 필요함
- 규제플랫폼을 누구나 이용하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우선 규제개선을 위해 가이드 라인 및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정 및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향후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은 균형발전적 규제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는 규제전문심사기구(기관)의 마련에 대해 검토되어야 함
- 비효율적인 규제의 경우 규제전문심사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일몰제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규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수정 검토 필요

# 제 5 장

## 지방규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제2절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제3절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내  
정부별 역할



## 제5장 지방규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 제1절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 1.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 □ 지방규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

- 현재 지방규제의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내 자치법규(조례·규칙)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위법령이 수정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의 수정만으로는 규제혁신 및 규제해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지자체는 기업이나 지역 주민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명시된 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규제의 범위 확장이 필요함
- 기존 논의에서는 사전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심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규제개혁은 사후규제개혁에 해당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에 중요성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지방규제의 정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내 지방규제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 □ 타 법률 검토

- ICT 융합
  -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 관련법률: 정보통신융합법(19.1.17 시행)
  - 관련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검토내용: 신기술·서비스 심의

- 구성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부장관)

**제10조의2:**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법률의 기본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적이어야 하며, 정보통신 환경과 생태계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최소화를 노력하는 것임

**제3조:** 기본원칙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자는 기존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할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제37조(임시허가)**

-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신기술·서비스 사업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허가 등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할 경우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제38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산업융합

- 주관부처: 산업부
- 관련법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9.1.17 시행)
- 관련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검토내용: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 구성위원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조**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신제품·서비스 사업자는 기존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제10조의 3: 규제특례**

-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신제품·서비스 사업자는 기존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제10조의 6: 임시허가**

-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규제자유특구

- 주관부처: 중기부
- 관련법률: 규제자유특구법 제정(19.4.17 시행)
- 관련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구성위원회: 규제특례등 심의위(위원장: 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위원장:국무총리)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률의 기본원칙은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임

**제4조: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특례가 적용됨

**제2조: 규제특례의 정의**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음

**제18조: 조례의 제정**

-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 혁신융합**

- 주관부처: 금융위
- 관련법률: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 관련기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구성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위원장: 금융위원장)
- 규제특례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법률에서 규제해소의 함의****○ 목적과 수단의 괴리**

- 법령의 목적 열거 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동일한 규제해소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 제1조는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산업융합 촉진법 제1조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역특구법 제1조에서도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각 규제해소를 위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혁신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채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이 위촉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위촉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음
- 이는 규제특례자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일조할 수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지방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새로운 행정문제 대응 부재

- 인구감소와 관련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균일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보다 일부 편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렇듯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 현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현상임. 20.3월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을 추월하였으며 그 외에도 GRDP 49.9%(‘17), 일자리 51.3%(‘17), 1,000대기업 73.6%(‘16), 신용카드사용액 81.0%(‘15), 비수도권 서비스 접근성 취약 92.5%(‘16)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둘째는 데드크로스의 원년임. 인구는 자연감소하여 20년 기준 출생 275,815명으로 19년 대비 3만 2,882명이 감소하였으나 사망은 307,764명으로 출생에 비해 31,949명이 적음. 이는 전체인구 '19년말 5,184만 9,861명 대비 '20년말 5,182만 9,023명으로 2만 838명이 감소한 수치임
  - 셋째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점. '18년 0.98명이며, '22년에는 0.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은 65세이상 고령 인구율이 15.7%으로 '43년에는 36.4% 예측이 예상되어 일본 36.35%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조혼인율(1,000명당혼인건수)은 07년 7건, 15년 6건, 18년 5건, 19년 4.7건, 20년 3.7건으로 감소 추세이다. 국내혼인건수 역시 19년 13.4만 건에서 20년에는 11.8만 건으로 약 16,000건이 감소(12%)된 수치임
  - 이러한 인구구조변화의 특징과 문제는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한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경제 성장동력 저하, 인구보너스 사회에서 인구오너스 사회로 전환을 초래하여 국가 잠재성장력 약화로 이어지고 행정비용 증가, 지역경제 쇠퇴로 인해 지역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생활인프라 위축, 지역공동체 붕괴, 생활안전성 저하로 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축소 및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사항이라는 점에 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됨
  - 이러한 새로운 행정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비용편의 중심적인 규제 해소를 위한 접근의 한계가 예상됨
  -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향후 오랜 기간동안 매우 관심있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 부재
- 규제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며, 세계화 시대

를 넘어 지방시대 및 글로컬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술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이와 같은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중앙,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에 관한 논의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 2.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 근거

### □ 지방규제 재정의의 법률적 근거

#### ○ 헌법 상 근거: 공공복리와 균형있는 경제성장

- (제37조제1항, 제2항)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아니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음
- 공공복리는 국가 구성원 전체가 추구하는 이념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있음
-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역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은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제37조 제1항, 제2항** :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9조 제2항** :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상 근거 :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균등한 행정의 혜택
- (제1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반하여 사무처리해야 함
  - (제17조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제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법적용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짐

**제12조 제1항**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항** : 주민의 권리

-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제3항** : 사무처리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지향점과 배치되는 지방자치법 사무처리의 한계
  - 헌법 상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지향함에 경제 민주화를 통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규제의 정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조례나 규칙만 허용한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 모순적 행정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근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제10조 :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함
  - 특히,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산업, 인력, 과학기술, 교통, 문화 등에 관한 진흥정책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 및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함
- 행정규제기본법 내 규제 법정주의와 배치되는 규제해소 절차
    -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내 규제 법정주의를 채택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특히, 규제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법률 위임에 의해 조례·규칙이 정해지게 되어 있음
- 규제 법정주의는 조례·규칙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결국 하위법령으로서 조례·규칙은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이 우선 개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제4조 제2항, 제3항 : 규제 법정주의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 지방규제의 정의 확장을 위한 경험적 근거(사례제시)

### ○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규칙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호주제 폐지 등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은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별법에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식(조례·규칙 별지)은 여전히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요구 (○시 등 13개 지자체 조례, △시 등 75개 지자체 규칙)
-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으로 호주·호적 등의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민원서식에서 해당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관련 사항을 기입 하도록 규정 (□시 등 249개 지자체 조례, ☆☆군 등 97개 지자체 규칙 (\*1개 지자체에서 다수의 민원서식 오류 조례·규칙 발견)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분을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로만 구분 → 관련 민원서식에 미반영 (◎시 등 22개 지자체 규칙)
- 결과: 변경된 제도·정책에 따라 민원서식의 내용·용어를 정정\*
- \* 정비완료 : ○시 등 297개 지자체 조례·규칙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심사내용) 체육지도자 재교육
  -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2년 주기 6시간 이상의 재교육 의무화
  - (재교육 대상 범위)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교육시간 등)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교육내용, 연기 사유 등
-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재교육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재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음. 체육계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피규제집단을 한정하고, 재교육은 2년 주기로 6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체육계 폭력 예방 및 인권 의식 향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피규제집단 및 규제내용을 설정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의한 의결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공유재산 감정평가 자격,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묘 설치기간 등이 완화되었으나 이를 자치법규에 미반영

- 공유재산법령 개정으로 행정재산 사용·매각·교환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도 수행가능 → 여전히 법인으로만 제한 (○○시 등 43개 지자체 조례, □□군 등 68개 지자체 규칙)
- 가축분뇨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이를 미반영 (☆☆시 등 9개 지자체 조례)
- 장사법령 개정으로 묘지나 봉안시설의 설치·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 여전히 15년으로 제한 (◎◎군 등 2개 지자체 조례)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 상위법령 근거 부재(미흡)로 인한 개정

- 법령에 근거 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

- 전통시장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상인회와 전통시장 운영계약 체결시 2개월치 사용료를 미리 보증금으로 징수토록 규정 (△△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노인회관 일부(카페·식당 등)를 주민이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미리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 (○○광역시 조례)
- 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보증금 1천만 원을 군수에게 예치하도록 규정(☆☆군 등 4개 지자체 규칙)
- 결과: 사용료·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
- 정비완료 : ○○시 등 3개 지자체 조례·규칙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손해보험 가입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사례 발생

- 공유재산법령상 지자체장이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월 70여 만 원)을 위탁관리자인 주민이 가입하도록 규정 (□□군 등 37개 지자체 조례)
-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발생한 과실 사고에 대해 공유재산법령 근거없이 이용 주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 (◇◇시 등 89개 지자체 조례)
- 결과: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
- \* 정비완료 : □□군 37개 지자체 조례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

- 산림보호법령은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 75만 원 이하로 상향 (◎◎군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 30만 원으로 규정 (△△시 등 34개 지자체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가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군 조례)
-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
- \* 정비완료 : ◎◎군 등 24개 지자체 조례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법령에 근거없이 포괄적 요건으로 전시관·도서관·어린이집 등의 계약·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위탁운영을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군 조례)
- 작은도서관(주거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되는 도서관으로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 등록을 도서관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공질서 유지나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시 조례)
- 영유아보육법령 근거 없이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는 요건으로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 결과: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외 취소요건을 삭제\*하여 조례 정비
- \* 정비완료 : ☆☆☆군 등 3개 지자체 조례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공공시설의 인력요건 및 시설기준, 공유재산 위탁계약 기간 등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제한

- 공유재산법령에는 지자체 체육시설·매점·공원·시장·복지회관 등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 이보다 짧은 3년 이내로 규정 (△△군 등 130개 지자체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1인 이상의 상담전문가 장애인을 두도록 규정 →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직원 1/4 이상과 센터장, 상담직원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 (○○시 조례)
- 도서관법령상 작은도서관은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면 설립 할 수 있도록 명시 → 열람석 15석 이상,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강화 (□□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 결과: 법령에 맞게 요건·기준·기간을 수정\*
- \* 정비완료 : ○○○시 등 52개 지자체 조례

출처 : 규제개혁백서(2020)

### 3. 지방규제 개념의 재정의(안) 및 세부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규제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재정의된 내용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함

- (1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장점: 규제자를 지방자치단체, 규제범위를 위임된 사무, 피규제자를 법인

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구체적인 규제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단점: 규제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상정하여 규제해소를 위한 대상 및 사무가 한정적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규제해소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2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장점: (1안)에서 규제범위만 제외된 것이며, 규제자와 피규제자를 상정하여 규제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일정부분 구체성을 갖추고 있음
- 단점: (1안)과 같이 상당부분 규제 내용이 있으므로 규제해소에 경직성이 있음

○ (3안)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장점: 규제자 없이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범위만을 상정하여 규제해소 대상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여 적극해소가 가능함
- 단점: 규제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 내용에 따라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함

## □ 지방규제 재정의의 특징

### ○ (사무) 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배분된 사무를 수행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12조제3항)
- 또한 자치법규로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 ○ (법령) 중첩규제

-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배치라는 목적에 따른 균형발전정책에 기반하여 추진된 규제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하향 평준화 및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행정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복수규제에 의한 중첩적인 제도가 진행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첩된 규제는 단일행정기관 외에도 복수의 행정기관에도 적용되고 있음에 따라 규제해소의 경직성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함
- 지방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중첩규제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 (공간) 권역지정

-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환경기술에 따른 제도적인 여건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입지·규모 중심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관리대상과 기존 설정된 권역 간 괴리 또는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권역지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 □ 지방규제의 세부 내용

## ○ 위임사무

- (정부조직법 제6조) 소관사무의 일부 위임 또는 위탁 가능
-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 \*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5조-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위임
  - \* (제13조)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주민의 복지증진, 3.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국제교류 및 협력
  - \*\* (제115조-제117조) 국가사무의 위임,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사무의 위임 등

## ○ 중첩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수도법·하수도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초지법·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림기본법, 시행령 등

## ○ 권역지정

- (군특법 제2조제2호-12호) 기초생활권, 초광역권, 지역특화산업, 초광역산업,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새만금사업지역 등),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수도권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2조제2호, 제3호) 지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역개발지원법 제2조제4호-제7호) 투자선도지구, 낙후지역, 거점지역, 지역활성화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3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구역, (군사기지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 등

## 제2절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 1.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필요성

#### □ 지방규제의 특성에 따른 분야별 규제해소 의견 수렴

- 현재 운영 중인 규제해소를 위한 창구는 국조실의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리고 행안부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임
  -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공문 접수로 운영됨
- 지자체는 위의 창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규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되 규제의 특성상 규제건의자에게 빠른 회신을 위해 규제관리의 일원화 필요

#### □ 효율적인 규제해소 운영을 위한 지방규제전담기관 설치 근거

##### ○ 정부조직 상 근거(정부조직법)

- 행정안전부의 주요업무는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정부혁신 및 지방자치제도의 총괄하고 기획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해소 건의 중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 간 사무 및 법률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조정 및 협의주체가 필요함

#### 정부조직법 제34조 : 행정안전부의 임무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

### ○ 지방자치법 상 근거

- 지방자치정보(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6조제1항, 제2항)
-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제35조)

### ○ 평가주체 상 근거

-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각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합동평가의 실시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내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이 평가지표에 해당됨
- 국정목표에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2-4.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을 놓겠습니다.', 중 '2-4-16.규제시스

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이며, ㉞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 읍부즈만 규제애로 건의 및 개선 실적이 평가내용에 해당함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 약속	2-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국정 과제	2-4-16. <b>규제</b>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지표명	㉞ <b>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읍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b>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 -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서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추진			
지표 유형	경향	중용	경순	신규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국조실(규제개혁신문고)·중기부(읍부즈만)를 통해 지역민생·경제현장의 각종 규제애로건의를 발굴·개선한 실적		
	평가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목적	지자체의 국민·기업 등 일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행정불합리 포함) 발굴을 적극 유도		
	기대효과	지역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		
	기타참고사항			
측정 방법	<b>○ 산식</b> -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기업 및 일선 행정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건의 ① 국조실(규제신문고) 건의 및 개선 실적 : 민생·경제, 국민불편, 행정불합리 등 중심으로 건의 ② 중기부(읍부즈만) 건의 및 개선 실적 :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중심으로 건의 ⇒ ①과 ②를 통합, 건의 및 개선 실적(실적인정기간 : '22.1.1.~'22.12.31.)			
	<b>○ 산식 설명</b> ① 시군구와 시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출 : <b>발굴 실적(건의)(A) + 처리 실적(개선)(B) + 가 점(C) = 실적 소계</b>			
	구분	발굴실적(A)	처리 실적(B)	가 점(C) ※
세부산식	건의과제 건수 (국조실+중기부)	규제개선 건수 (국조실+중기부)	<기업활력 제고지수 + 주요 성과과제> 가점 (중기부)	
<b>* A. 건의과제</b> 건수 : 국조실(규제신문고)에 건의·처리한 과제 중기부(읍부즈만)에 건의·처리한 과제 <b>* B. 규제개선</b> 건수 : 건의과제 중 소관부처·기관이 수용(일부수용, 대안제시 포함), 최종적으로 규제애로를 해소키로 한 과제				

- ‘2-4-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서 ㉔중양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을 평가하게 됨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 약속	2-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국정 과제	2-4-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지표명	㉔ 중양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지표 성격	< 국가주요시책 > - 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22.5)에 따라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비용 감축 등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체감도 등 제고														
지표 유형	경량	공통	경순	계속(변경)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o 지자체에서 중양부처에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중 행안부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된 과제 실적 및 소관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수용한 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불편해소, 신산업 지원,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개선 등 건의 과제													
	평가근거	o 해당없음													
	평가목적	o 주민과 지역기업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규제 예로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기대효과	o 지역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기타참고사항	o 해당없음													
측정 방법	o 산식														
	구분		중양부처 건의규제 중 중점과제 선정 및 개선 실적												
	세부 산식		실적건수(선정건수 + 해결건수 + 우수사례 보도건수)												
o 산식 설명															
- 선정건수:															
o 중양부처 건의과제 중 행안부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한 건수															
- 해결건수:															
o 행안부에서 선정한 중점과제 중 ‘22.12.31.까지 소관 중양부처에서 규제개선 사항을 수용한 건수															
o 행안부 선정 중점과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소관 중양부처에 직접 건의하여 ‘22.12.31.까지 규제개선 사항을 수용한 건수															
- 우수사례 보도건수:															
o 지자체 건의과제 중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보도한 과제 건수															
o 시도별 목표															
- 시도별 소속 기초지자체수에 따라 목표 설정한 수치에서 5% 증가(소수점 첫째자리 절상) (기준 목표값 10건을 기준으로 해당시도 + 기초지자체수 별 1건씩 증가) => 시도별 지자체수 및 인구수를 반영하여 5% 증가분을 조정(7개 시도 변동없음)															
해당시도 +기초수		1	1 (행정시2)	6	9	11	12	15	16	17	19	23	24	26	32
목표		10	12	15	18	20	21	24	25	26	28	32	33	35	41

- '2-4-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중 ㉔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이 선정됨에 따라 적극적 법령해석과 능동적 규제발굴·해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해당됨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 약속	2-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국정 과제	2-4-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지표명	㉔ <b>적극행정 활성화 노력</b>				
지표 성격	< 국가주요시책 > -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극행정 및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지표 유형	경량	공통	정순	계속(변경)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이 전례가 없는 적극행정 추진시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 실적</li> <li>○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예로를 해소한 사례 중 행안부가 인정한 실적</li> </ul>			
	평가근거	○ 해당없음			
	평가목적	○ 적극적 법령해석과 능동적 규제 발굴·해소 등 적극행정으로 공무원 행태개선			
	기대효과	○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예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기타참고사항	○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실적 = ① 사전 컨설팅감사 건수(실적건수) (50%) ②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선정건수) (50%)</li> <li>○ 산식 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li> </ul>				
	구분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실적			
		① 사전 컨설팅감사 건수(50%)		②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 선정건수(5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시도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컨설팅감사 건수</li> <li>· (목표) 지자체수 비율×최근 3년('18년 - '20년) 평균 실적 총계×1.05</li> <li>① &lt;목표값 조정 원칙&gt; 2020년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 값을 적용하고,</li> </ul>					

## 2. 거버넌스 체계 개선내용

### □ 개선요청

#### ○ 온라인

- 현재 온라인 상 규제개선을 위한 요청 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음<sup>12)</sup>
- 규제개혁신문고는 온라인(<https://www.sinmungo.go.kr>)을 통해 건의가 가능하며, 건의자는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분됨
- 여기서 공무원은 지자체 규제개혁담당자와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로 구분되어 접수가 이루어지며, 일반인은 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옴부즈만(<https://www.osmb.go.kr>)은 중견 및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제시하는 창구임

#### ○ 오프라인

- 규제개선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현장규제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과제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규제개선 협력체임

#### ○ 지자체의 개선안건 검토 및 상급기관 개선요청

-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규제개선을 위한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해소 검토를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수정하여 규제제안자에게 회신함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상급기관(광역 또는 중앙정부)에 개선안건 송달 후 검토 요청

12) 규제개선 유사 사이트로는 규제특례를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https://www.sandbox.or.kr/>),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https://sandbox.kiat.or.kr/>),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http://rfz.go.kr/>),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https://sandbox.fintech.or.kr/>),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시티(<https://smartcity.kai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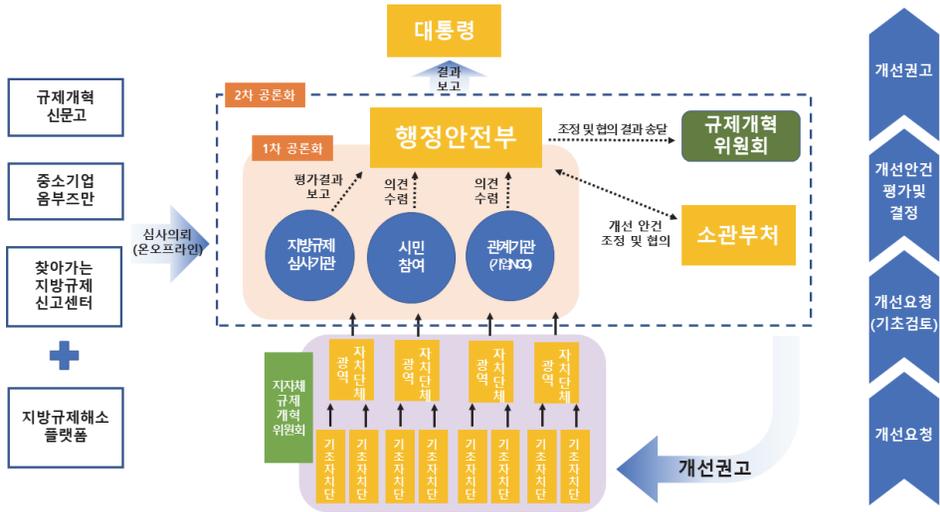
## □ 개선안건 평가 및 결정

- 규제해소 안건이 복수의 부처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음
  - 지방규제심사기관의 경우 규제 내용에 대한 제도 및 법률적 문제소지뿐 만 아니라 균형발전적 관점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
  - 규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제와 직접적인 영향범위에 있는 시민, 그 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 의견을 수렴함(온라인)
  - 규제해소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수정으로 인한 효과성 의견을 수렴함
- 행정안전부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관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결정 내용을 송달
  -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방규제심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관부처와 제도 수정을 협의함
  - 행정안전부가 건의한 규제개선안 관련 협의가 부결될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달하여 정부 간 조정을 요청함
- 규제개선의 협의결과를 규제건의자(일반, 기업, 지자체 등)와 대통령에게 보고함

## □ 개선권고

- 규제개선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함
- 지방자치단체는 권고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규제개선사례집에 수록함

〈그림 5-1〉 지방규제해소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 제3절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내 정부별 역할

#### 1. 중앙정부

##### □ 지방규제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 필요

- 다양한 지방행정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과 각 중앙행정기관과 소통 및 조정, 협의자로서 가교역할이 요구됨
-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지원행정,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등에 관한 총괄부서

##### □ 행정안전부 내부

###### ○ 규제가이드라인 구성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는 규제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14조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명시하여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및 기존규제의 정비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의 정의에 따라 지방규제의 범위를 설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균형발전적 관점의 규제분야를 선정함

###### ○ 규제심사 및 검토

- 규제안건을 평가할 수 있는 지방규제전문기관을 선정 및 운영하여 기존 경제적 효과 등 정량적 분석에 한정된 분석 외 균형발전적 관점의 규제심사를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규제안건을 지방규제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함
-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함
- 규제개혁위원회 내 지방규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

- 규제전문성 역량강화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방향 기초를 포함하여 관련 법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규제관련 전문가로서 활동가능한 인력 풀(pool)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컨설팅 수행
- 규제해소 플랫폼 운영(온오프라인)
  - 현행 규제개혁신문고는 국조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각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의 규제해소 플랫폼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선 건의 수렴

#### □ 행정안전부와 소관부처

- 규제안전 검토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안전을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지방정부 간 규제협약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정자로서 역할 필요
  - 규제안전 발굴뿐만 아니라 조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필요
- 규제조정
  - 건의한 규제안전 중 타 부처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의
  -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달
  - 규제협의 결과를 규제건의자 및 대통령에게 보고

## 2.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내부

- 규제전문가 양성
  -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규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전문가 인력 풀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 분야별 규제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규제해소를 위해 상시 및 적극적인 문제 대응
-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정기적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하여 제도의 지속성 유지
  - 규제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병행하여 발굴된 규제안건 검토
  - 지방자치단체 내 조정 및 협의 불가능한 경우, 상급기관에 안건 송달 후 조정 요청

### □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체 구성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 안건 조정
  - 정기회를 통해 규제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규제에 대한 의견 공유
- 지방규제연구기관 선정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적 향상을 위해 지방규제연구기관을 선정
  -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규제연구기관 간 사례 공유 및 협력할 수 있는 기구 마련 운영



## 참고문헌

- 김광휘. (2015). 우리나라 지방규제개혁 정책과 해결사례. 「자치발전」, 2015(2). 44-50
- 김명선. (2019). 미국, 영국, 한국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특성에 관한 연구: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 (MSSD) 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3(6), 281-299
- 김신 외. (2009).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영훈. (1995).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 김정해 외. (2006).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정해 외. (2008). 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현호, 박해육. (2014). 지방규제 개혁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박근혜정부 지방규제 개혁 추진전략 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5
- 권현영(2019).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KISO저널. 35:30-37
- 박순애, 손지은. (2015).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 규제체감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4). 185~211
- 법제처. (2014).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 배영임, 신혜리. (2019).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경기연구원 이슈&진단:1-27
- 손지은. (2016).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26
- 엄영호, 손선화. (2018). 한국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신설, 강화,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4). 237-259
- 윤석진. (2013).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지방자치법연구, 13(4). 3-31
- 이달근. (2004). 「2004 지방행정의 과제와 전망: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53(603). 23-32
- 이민창. (2019). 미국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함의. 「한국행정연구」, 28(2). 1-30
- 이민호. (2018).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355-384
- 이은미, 이은국, 고기동. (2014). 지방정부의 규제 채택요인에 관한 퍼지셋 분석: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349-373
- 이시경. (1996). 환경규제 정책수단 선택의 쟁점과 기준. 「한국행정학보」. 30(1). 1113-1127
- 임준환 외. (201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험연구」. 2014(4). 1-20
- 임원혁. (2014). 「규제제도 및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1-422
- 장민선. (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입법평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정민경, 임현. (2018).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4(2). 155-194
- 정준금. (1991). 환경규제의 정치, 경제적 성격.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1(2). 1-18
- 최병선. (2006). 정부규제론. 파주: 법문사
- 최병선. (2009).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행정논총. 47(2). 1~30
- 최승필. (2013). 경제적 규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13(4). 33~62
- 최철호. (2021).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법학연구. 29(1):195-218
- 최호성, 김정대. (2019).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3): 73-78
- 최호성, 김정대. (2019).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2):31-36
- 최해욱. (2017).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과 이슈. 33: 1-20
- 임성일 외. (20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현호 외. (2014). 「지방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권식. (2014).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대 축: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강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통권 2014-06
- 행정안전부. (2019).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행정안전부. (2020).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행정안전부. (2021).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행정안전부. (2022). 「자치법규업무매뉴얼」
- 행정안전부. (2022. 04.).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2022. 08.).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안」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2020). 규제개혁백서 2020
- OECD. (2017).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개혁보고서
- GAO. (2009). *Federal Rule-making: Improvements needed to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rules development as well as to the transparency of OMB regulatory review*. Washington D.C.: GAO.
- OECD. (2018). *Regulatory Policy Outlook*. OECD.Paris
- OECD. (2018b). *Case Studies of RegWatchEurope regulatory oversight bodies and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ory Scrutiny Board*. OECD. Paris
- OECD. (2021). *Regulatory Policy Outlook*. OECD.Paris
- OIRA. (2001). Making sense of regulation: 2001 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 and benefits of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OMB report*.
- OIRA. (2005). Validating regulatory analysis: 2005 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OMB Report.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2, CEDA, 2022.07.03.,

<https://www.ceda.com.au/ResearchAndPolicies/Research/Economy/World-Competitiveness-Yearbook-2022>. ('22.11.30 확인)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IMD, 2022.07.03., <https://www.imd.org/centers/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competitiveness/> ('22.11.30 확인)

BEIS,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22.11.30 확인)

OIRA, [www.whitehouse.gov/omb/information-regulatory-affairs/](http://www.whitehouse.gov/omb/information-regulatory-affairs/) ('22.11.30 확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www.reginfo.gov](http://www.reginfo.gov) ('22.11.30 확인)

[www.gov.uk/government/groups/better-regulation-executive](http://www.gov.uk/government/groups/better-regulation-executive) ('22.11.30 확인)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partment-for-business-energy-and-industrial-strategy-outcome-delivery-plan/beis-outcome-delivery-plan-2021-to-2022](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partment-for-business-energy-and-industrial-strategy-outcome-delivery-plan/beis-outcome-delivery-plan-2021-to-2022) ('22.11.30 확인)

[www.opm.go.kr/opm/office/group01.do](http://www.opm.go.kr/opm/office/group01.do) ('22.11.30 확인)